널

주 식





eAnSe.com

30분내₊즉답829-7575 Q&A답글⁺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2022 액면분할·액면병합·상호변경 실무해설 (상장회사협의회)

[주요정보]

- · 하반기 신규사업<mark>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국세청)</mark>
-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중소벤처기업부)
- · 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중소벤처기업부)
-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금융감독원)
- · 2021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금융감독원)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등록번호 영등포리-0129ㆍ등록일 2003 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 령 및 실천요강을 주수합니다

안 건 조 세 정 보

안안 세건 회조 계세 법정 인보



829-7557 829-7555

Ause, the Best Auswer

eanse.com

•••••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PA 전문 1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회계감사 2 소속회계사 115명 + 세무직원 286명 = 성실한 401명 활동

세무대리 3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재무자문 4 2020년 매출액 535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경영컨설팅 5 서<mark>울 핵심</mark>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회계기장 6 모<mark>두 업무기</mark>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창업지원 7 獨自<mark>創安(독</mark>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기업승계 8 고객<mark>현장근무</mark>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경리·재경아웃소싱업무를수행할 안세의전국사업본부의소속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안건조세정보 회사 (02-829-7575)

서울본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금융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

계 · 금융자문 · 품질관리심리실 · 준법감시인 · 재경본부운영 · 전문지식정토 박윤종 · 김영석 · 고주연 · 이동건 · 안수현 · 장용석 등 70명 등기이사 파트너

/ 심리실 :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심리역)

고두환·고영일·공희성·김경수·김봉수·김수범·김영근·김옥철·김윤전·김종창·김준영·김준일·김형석·나경수·박규태·박기훈·박병준·배익권·송형곤·안수환·윤훈기·이만선·이미지·이사야·이승환·이원재·이형주·정상문·조민기·조성민·조영우·진경일·진수미·표정협·최우영·한상표·한용주·홍종혁·허진영(변호사: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곽영미·김태현·이현섭·배문호·송태헌·최민욱·신민석·조세용·황준호·정호신·김동현
갓나그유보브	070_5101_1651 으서궈 . 기요화 . 기스버 . 호히비 . 이혜리 . 기요히 . 기여다 . 서지은 . 바겨췌 . 이워그

00000	070 0101 1001 TOL BOT BTB STE MALE	1 00-1 00-2	1T 7091 912T
동작남부분실	02-6011-5514 이남재·정헌·허근·황창연·장욱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김현민 + 3인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이동계·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김태경·라선희 + 10인
대전 충 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 · 김형진 · 정대환 + 10인	논현지점	571–3700 정원용 · 임진호 · 안영호 + 4인
광주호남본부	062-714-3303 양철성 · 김희표 · 김민주 · 김창훈 · 최재용	삼성동지점	02-312-2254 안수현 · 조성민 · 유진우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 · 이성태 · 양승민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고주현 · 양용석 · 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 · 홍영표 · 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 · 유지윤 · 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고경호·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원영민·강병훈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이희곤·정영훈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 · 이동건 · 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민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나, 김흥기·윤경만·박희	[1원·이우목·이미경 경영지도사

안세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세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 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창업적 활동함.(02-829-7575)

- 1.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 2.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 3.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 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 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 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율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 4.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 계지원
- 5.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 6.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 탁정산
- 7.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 액 검증
- 8.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 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 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 9. M&A 실사·조사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 10.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 11. 외국·해외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 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 12.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사외이사취임,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구성원 역할





www.eAnSe.com

⁸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 · 훈련강의**저**널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분야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자 입니다.

이달의 특집

-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실무해설 (상장회사협의회) ······ 2
- · 2022 액면분할 · 액면병합 · 상호변경 실무해설 (상장회사협의회) 40

세무정보

·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국세청) ········· 67

10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0**(목) 법인·소득세(농특세 포 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 민세(종업원분) 신고납 부, 레저세(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 부, 증권등거래세 신고 납부

21(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30(수)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종 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액 신고, 교육세(금융·보 험업분) 제3기분 신고납 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교통세(교육 세·주행세 포함) 자진신 고납부, 주세(교육세 포 함) 신고납부, 일용 사 업 • 근로 • 기타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경영정보

·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100 ·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102

회계정보

·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금융감독원) 104 · 2021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금융감독원) ···· 130 · 부가세영세욜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10월) 144 이달의 -----특 낍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실무해설

- 상장회사협의회 -

1. 주식교환·이전 개요

01. 개념

- 회사 간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을 통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모회사가 되고 다른 회사는 자회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상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도를 두고 있음
 - 여기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회사를 완전모회사라 하고, 발행주식총수를 소유당한 상대방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 이란 회사가 신주(또는 자기주식을 발행 또는 교부하여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주주가 가진 주식와 교환함으로써 회사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회사는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형태의 거래임(상법 30조의2)
 - 주식교환의 사자가 되는 모회사는 제도의 성질상 한 개의 회사이어야 함. 그러나, 자회사는 수개의 회사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회사와 수개의 자회사간의 관계는 각각 맺어지는 것임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란 B회사가 가진 주식 전부(구주)를 신규로 설립되는 A회사에 출자하고 B회사의 주주는 그 대가로 회사의 주식 (신주)을 교부받음으로써 B회사가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형태의 거래임(상법 36011
- 주식교환은 기존회사의 신주(또는 자기주식가 다른 회사의 구주 전부와 교환되는지, 아니면 구주 일부와 교환되는지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과 부분적 주식교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주식이전도 기존회사의 주식(구주을 새로미 설립하는 회사에 모두 이전하는지, 마니면 일 부만 이전하는지에 따라 포괄적 주식이전과 부분적 주식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부분적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은 상법상 자산양수도와 신주의 제3자배정 및 현물출자에 해 당하며, 부분적 주식이전의 경우 법인을 신설해야 하므로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관련한 규 짂을 따라야 함

(1)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비교

구 분	주식교환	주식이전
완전모회사형태	기설립 회사	신규 설립회사
기본서류명칭	주식교환계약서	주식이전계획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요구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인정	인정
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	불필요
간이/소규모 절차	인정	불인정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	신주 또는 자기주식	신주
효력발생시기	교환기일	완전모회사 설립등기일
등기내용	완전모회사 증자등기 (없을 수 있음)	완전모회사 법인설립등기

(2) 주식교환 · 이전의 종류

- 주식교환의 경우 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일반 주식교환, 소규모주식교환, 간이주식교환으 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러나, 회사가 신규로 설립되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소규모주식이전 및 간이주식이전은 인정되지 않음

일반 주식교환	부총특별결의 요구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규모가 큰 완전모회사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
	(요건) 교환되는 신주 또는 자기주식의 비율이 완전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를
, J D Z A J = 1	초과하지 아니하고 교부자산금액이 완전모회사 순자신의 5%를 초과하지 합
소규모주식교환	마야 함
	(효과) 완전모회사 주총결의를 이사회결의로 대체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불
	인정
	완전자회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
ᆌᄭᄌᄭᄀᅙ	(요건) 완전자회사 총주주의 동의 또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의 90% 이상
간이주식교환	을 소유
	(효과) 완전자회사의 주총결의를 이사회결의로 대체

* 완전자회사 총주주의 동의 존재시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 한편 주식교환의 경우 기존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이 아닌 자신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데 이를 삼각주식교환이라고 함(상법 360조의3)
 - 삼각주식교환은 기존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교환의 상대방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법임.

(3) 주식교환·이전의 특징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주식교환·이전의 특징

- 주식교환 · 이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① 완전모회사의 증자 또는 출자의 대가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인정된다는 점
-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 구성이 완전모회사 1인 주주로 구성된다는 점
- ③ 현물출자를 수반하면서도 검사인의 조사 보고절차가 면제된다는 점
- ④ 현물출자를 수반하면서도 출자하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 ⑤ 주식교환이전으로 완전모회사는 자산과 자본이 증가하고 완전자회사는 재무구조에 변동이 없어 개권자피해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점

2) 주식교환·이전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 주식교환·이전은 완전모회사의 자산에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지분법투자주식으로 편입되고 그에 해당하는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가가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경우 자산 및 자본이 증가하나 완전자화사의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주주의 구성만이 변동됨
- 또한, 주식교환. 이전으로 교환당사회사는 법률적으로는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로서 독립적으로 존속하나, 경제적으로는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가 지분법(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연결되어 동일한 경제적 결합체를 형성하게 됨
 - 법률적으로 주식교환·이전에 따라 기업이 결합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합병 등에서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미용됨

02. 주식교환 · 이전의 제한규정

(1) 상법상 제한

1)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

○주식의 교화·이전시 부심한 자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모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상법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 한도액 < 완전자회사 순자산 (①+②)

- ①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 ② 신주발행에 갈음하며 완전모회사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다만, 완전모회사가 주식교환일 이전에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산식 에서 완전자회사 순자산 부분을 완전자회사 순자산 완전모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수의 비(발행주식총수 대비)로 대체하여야 함
 - * 순자산가액 평가의 기준일은 주식교환일

[주식의 포괄적 이전] (상법 360조의18)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한도액 ≤ 완전자회사의 순자산 -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전이 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상호주 보유 제한

- ㅇ 주식교환 전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교환 후에는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모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주식교환일 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상법 342조의2)
 -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완전모회사 주식은 의결권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상법 359조③)

(2) 공정거래법상 제한

1) 기업결합신고

[사전신고제도] (공정거래법 12조⑥ 및 ①, ⑧)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에 의하여 의결권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20%(상장법인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기업결합일 이전까지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후 공정위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30일 소요. 90일 추가연장 가능) 실제 기업결합을 해서는 안됨

[사후신고제도] (공정거래법 12조① 및 ⑥)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 전에 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20%(상장법인 주식의 15%) 이상을 소 유하는 경우 주식교환일 또는 이전일로부터 30일 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

2) 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의 신고] (공정거래법 8조 및 동 시행령 15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당해 사법연도 결산을 실시한 결과 회사의 자산총액이 5천원 이상이고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의 신고를 하여야 함

(3) 자본시장법상 제한

1) 주요사항 공시

-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교환·이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하여야 함
 -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일 또는 계약체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국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주식교환·이전을 완료한 때에는 합병 등 종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주식교환·이전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회사는 주식교환·이전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 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함
 -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증권신고서 수령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투자설명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함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 주식교환·이전 완료에 따른 합병등 종료보고서 제출은 면제 됨

2) 교환비율 외부평가기관 평가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불공정한 주식교환비율의 산정으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에서는 주식교환가액 평가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및 주식교환비율 산정방법을 합병의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자본시장법 165조의4②)
 - 다만, 주식이전으로 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으므로 그러하지 않음

3) 우회상장 제한

ㅇ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주식교환을 할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교환됨으로써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신규상장심사 및 절차를 거 치지 않고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교환되는 효과(우회상장)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회상장 확 인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회상장이라고 거래소가 인정한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여야 함(상장규정 32조, 33조)

- 신규상장하는 비상장법인과의 형평성 및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과 주식교환하는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상장요건을 충족하여야 주식교환이 가능하 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화으로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비 상장법인의 최다출자자 등에 배정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 하고 있음(상장규정 35조 및 동 시행세칙 31조)
- 따라서 경영권 변동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이 없고, 경 영권 변동기준일 현재에도 주권상장법인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아니 함(상장규정 시행세칙 27조③)

[우회상장 확인서류 제출] (상장규정 33조, 시행세칙 29조)

-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제28조, 제4항제1호에 따른 분할합병 포함), 주식의 포 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양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결의 또는 결정한 경우
- 우회상장 확인서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제출
 - 1.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가 소유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현황 명세서
 -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명부 요약표
 - 3.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소유현황 명세서
 - 4. 그 밖에 제27조에 따른 경영권 변동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ㅇ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그 주요출자자와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려는 상장법인은 그 거 래 를 하기 전에 상장예비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우회상장 심사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후 해당 법인은 상장 폐지됨(상장규정 33조, 34조, 36조 및 동 시행세칙 28조)
- 또한,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우회상장신청인과 우회상 장 대상 법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함. 이 경우 주식등에는 상장후 6개월 이내에 무상 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포함함(상장규정 35조).
 - 의무보유기간은 I) 상장일로부터 6개월, ii)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시 발행일로부터 1년(그날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iii) 자본시장법상 (법 9조 18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최대주주인 경우, 동 최대주 주들은 상장일로부터 1년임(상장규정 27조, 35조).

[의무보유 대상자] (상장규정 33조, 시행세칙 29조)

-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
- 삼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 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출자자가 소유히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이 경 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됨
- 의무보유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상장규정 35조), 동 시행세칙 31조), 별표2.

[제출서류]

- 의무보유확약서
- 의무보유확약서와 관련하여 예탁원이 발행한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무보유를 위한 전자등록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

[의무보유를 위한 전자등록 의의 및 절차](전자등록 업무규정 33조, 34조, 동 제 31조 32조)

의무보유등록이란 전자증권법에서 증권 실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등의 소유자가 고객계좌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의 자기계좌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탁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해당 증권의 처분 을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로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는 것임.

- ① 특정 주식들을 전자등록하여 일정기간 의무보유를 하여야 하는 의무보유자가 발행인인 지정한 지정 계좌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의무보유하여야 하는 주식등을 지전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전자 등록. 이 경우 지정계좌관리기관은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때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별 명세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등록하여야 함.
 - 의무보유자는 의무보유전자등록주식을 예탁결제원의 다른 전자등록계좌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하여야 함
- ② 의무보유자가 지정계좌관리기관인 경우 : 의무보유지명의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의무보유 하여야 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

[[의무보유등록 주식의 일반 전자등록 전환절차] (전자등록 업무규정 34조, 동 세칙 33조)

의무보유자가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을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 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의무보유자가 지정계좌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지정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
- ② 의무보유자가 지정계좌관리기관인 경우: 예탁결제원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신청이 없는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지정계좌관리기관은 의무보유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을 의무보유자의 일반계좌로 계좌관 대제의 전자등 록을 함.
- 한편, 주주총회에서 결의안이 부결되거나 과다한 매수청구 등으로 주식교환계약(주식이전 계획이 해지되는 경우,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및 철회신고서(증권신고서 제출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증권발행절차가 종료함(자본시장법 120조④)

03. 다른 조직재편방안과의 비교

- 주식교환·이전의 경우 주식의 교환·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을 부분적으로 소유하는 주주의 부분적 주식교환·이전(이하 "주식스왑")과 유사하며,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경제적 실체가 합쳐진다는 측면에서 합병과 유사함
- o 한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검토되는 분할이 있음
- 이에 주식교환·이전과 주식스왘. 합병 및 분할은 다음과 같은 이동점이 있음

「주식교환·이전과 다른 조직재편방한과의 비교 요약」

- 의무보유자가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을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 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함.
- ① 의무보유자가 지정계좌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지정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
- ② 의무보유자가 지정계좌관리기관인 경우 : 예탁결제원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
- 의무보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신청이 없는 경우 예탁결제원 또는 지정계좌관리기관은 의무보유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을 의무보유자의 일반계좌로 계좌관 대제의 전자등 록을 함.

구분	주식교환·이전	주식스왑	합병	분할
기본 서류	주식교환계약서 주식이전계획서	주식양수 · 도 계약서	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주주 지위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 주주로 전환	주주 간 지위 변동	피합병회사 주주가 합병회사 주주로 전환	분할회사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도 됨 (단, 물적분할은 주주지위 변동 없음)
회사 결합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	하나의 회사로 결합	회사가 분리
회사 소멸	소멸회사 없음	소멸회사 없음	피합병회사 소멸	신설회사 발생
교환 범위	자회사 주주의 주식 전체	거래대상이 된 주식	피합병회사의 모든 자산	분할회사의 일부 자산이 분리
주총 승인	특별결의 요구 (소규모·간이 예외)	불필요	특별결의 요구 (소규모·간이 예외)	특별결의 요구
주식매수청 구	인정(소규모 예외)	불필요	인정(소규모 예외)	불필요
소규모 · 간이 여부	주식교환만 인정	_	인정	불인정
채권자 보호절차	불필요	불필요	필요	연대책임시 불필요
등기	완전모회사 자본변경등기/	불필요	합병회사는 자본변경등기,	분할회사는 자본변경등기,

	이거기 서리드기			분할신설회사는
	이전시 설립등기		소멸등기	설립등기
우회상장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발생	-	피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발생	-

Ⅱ. 주식교환 절차 해설

◉ 일반주식교환 일정표

순서	절차	대상처	목차
	이사회결의 및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II-1-(1)
1	주식교환 결의사항 공시(우회상장서류 제출)	FSS(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	
	구역파완 실러사장 등시(구외경경시규 세월) 	SS(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 KRX(결의일 당일) 상대회사 FSS(효력발생 7영업일 전) 신문/홈페이지(기준일 2주전까지) 대행사 등 FSS(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당일) 대행사(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FSS(소집통지 2영업일 전) 대행사(총회 2주간 전) (총회 2주 전) 주총 2주전·주식교환일 이후 6월 경과일) 대행사(총회 전일까지) KRX(주총 당일)	
2	주식교환계약 체결	상대회사	
3	증권신고서 제출(필요시 예비투자설명서 함께)	FSS(효력발생 7영업일 전)	I −2−(3) II −1−(2)
4	주총 기준일 공고		Ⅱ-1-(3)
5	주식매수청구절차, 주식교환계획 등 통보	1 1	Ⅱ-1-(4)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FSS(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당일)	Ⅱ-1-(5)
7	권리주주 확정 및 소유자명세 수령	대행사(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Ⅱ-1-(6)
8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시 참고서류 제출(해당시)	FSS(소집통지 2영업일 전)	Ⅱ-1-(7)
	주총소집 통지·공고 ● 무의결권 및 의결권 제한 종류주주 포함	대행사(총회 2주간 전)	
9	주총 참고서류 제출·비치		II -1-(8)
	주식교환계약서를 비치·공시		11 (0)
	투자설명서 교부		
10	주식교환 반대의사 접수	대행사(총회 전일까지)	Ⅱ-1-(9)
11	주주총회 개최 및 주식교환계약 승인		II -1-(10)
	주주총회결과 공시		11 (10)
12	주식교환 반대매수 청구 접수	대행사(주총 익일부터)	Ⅱ-1-(12)
13	완전자회사 주권 실효 공고·통지 (※ 전자등록한 경우 주식교환일 공고·통지)	신문사/홈페이지(주식교환일 1월전) (전자등록한 경우 주식교환일	Ⅱ-1-(11)
	신규전자등록 등 의뢰	2주전) 대행사	
14	주식매수대금 지급	대행사(매수청구 후 1월 이내)	Ⅱ-1-(12)
15	주식교환일(※효력발생)	실효절차 종료일 익일	Ⅱ-1-(13)
16	주식교환관련 서류 사후 공시	주식교환일로부터 6월간	Ⅱ -1-(14)

1.5	발행실적보고서 제출	FSS(모집 또는 매출이 완료한 때)	H 1 (15)
17	합병 등 종료보고서 제출	FSS(주식교환등기신청서	Ⅱ −1−(15)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 제출의무 없음	제출)	
18	주식교환등기(자본금변경 해당시 증자등기)	법원(납입기일부터 2주 이내)	Ⅱ-1-(16)
19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FSS(교환일 막일부터 5영업일 이내)	Ⅱ-1-(17)
20	임원 등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FSS(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Ⅱ-1-(17)
21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자산 1천억원 이 상)	공정위	Ⅱ-1-(18)
22	주식교환신주 배정·통지 및 추가상장 신청	대행사, KRX	Ⅱ-1-(19)

01. 일반주식교환

(1)-1 이사회 결의 및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 ㅇ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결의 를 얻어야 함(상법 350조의3)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편의상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와 함께 이루어 집

[주식교환계막서의 기재사항] 상법 360조의3)

-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화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 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점에 관한 사항
-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 6. 주식교환을 할 날
-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백
- 8.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 신주 배정시 자기주식의 문제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유한 경우 :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을 하면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이 문제될 수 있으나,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을 하고 취득 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 완전모회사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 한을 받음(상법 360조의7)

2) 주식교환을 할 날

주식교환을 할 날이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면 주식교환의 효력이 생기는 날을 말하며, "주식교환일" 이라고도 함. 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되고 자회사의 주주들이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을 의미함.

(1)-2 주식교환 결의사항 공시

- 상장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결의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공시규정 §7조①3가(4))
 - 상장회사의 주식교환 중 지주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좋액의 10% 이상인 주식교환을 공시한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되나, 간이주식교환(상법 360조의9) 소규모주식교환(상법 350조의10)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공시규정 40조①2, 동시행세칙 16조①6, ③2)
 - 비상장회사와 주식교환시 상장회사는 우회상장 확인서류를 KRX에 제출함으로써 우회상장 여부의 판단을 받아야 함(상장규정 33조①)
 - 공시시점부터 우회상장요건 충족 사실 확인시까지 매매거래정지하며,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우회상장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상장폐지
- 상장회사는 주식교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자본시장법 161조①6)

공시 Check Point

- 주식교환 결정 또는 주식교환계약 체결시 3일 이내 주식교환 결정 주요사항보고서 FSS 자본시장법 161조①6)
- 주식교환 결정 또는 주식교환의 체결시 당일까지 주식교환 결정 공시(KRX)(공시규정 7조(1)3가(4))
- □ 금융위(FSS) · 거래소 공동 서식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이사회 당일날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 · 거래소 공시의무 모두 충족.

(2) 증권신고서 제출

-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해야 함(자본시장법 119조, 동시행령 120조, 발행공시규정 2-10조)
 -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소액공모를 개시일의 3일전까지 제출

공시 Check Point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에 실질적인 청약일정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및 청의일정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공시(FSS) 자본시장법 119 조)

(3) 주총 기준일 공고

○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 설정되면 그 날로부터 2주간 전까지 회사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등으로 설정사유 등을 공고해야함(상법 354조②~④, 상법 289조③~⑥ 상법 시행령 3조의2)

ㅎ시 Check Point

• 주주명부의 폐쇄밀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주식명의개 t 서정재주주명부폐쇄」 신고(KRX 상장규정 7조 101)

(4) 주식매수청구절차, 주식교환계획 등 통보

- 발행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의 주식매수청구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 구 자의 자격, 매수가격, 접수시한,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함(자본시장 법 시행령 316조)
- 기준일 설정공고 후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주식교환계획 등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 해야 함

[대행사 통보시 첨부서류]

- 1. 주식교환 관련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 2. 주식교환계약서 사본 1부 3. 기준일 설정 공고 사본 1부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 및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함(자본시장법 120조, 동시행규칙 12조①)
 -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효력발생기간을 재계산함
-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공시(금융위)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청약사무취급처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123조①, 동시행규칙 13조①)

동시 Check Point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투자설명서 공시(FSS) (자본시장법 127①)

(6) 권리주주 확정 및 소유자명세 수령

- 명의개서대행회사는 기준일 현재의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주주명부 작성에 필요한 소 유자 명세를 전자등록기관에 요청하여 이를 수령하고, 발행회사에 인계함(전자증권법 37조 1항)
 - 발행회사는 소유자명세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전자증권법 17조 5항)

(7)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시 참고자료 제출

- 의결정족수 확보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사전에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할 것 인지를 판단해야 함
 -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제공 하기 2일 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8-1) 주주총회소집 공고 · 통지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해야 함 (상법 363조①)
 - 다만, 상장회사에 한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

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2회 이상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상법 542조의4①, 상법시행령 10조 참조)

ㅇ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요약하여 통지 또 는 공고해야 함, 또한 무의결권 또는 의결권제한 종류주주에게는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만은 통지해야 함(자본시장법 165조 5③)

「주식교환승민 주총소집 통지 · 공고문의 기재사항」상법 360조의3

-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 2. 제36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 4. 감사보고서 · 사업보고서
-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시하을 지킬 수 있도록 명의개서대행회사와 혐의된 기한까지 주총소집 안내문, 주식교환의 개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등 첨부물 을 인계해야 함

(8)-2 주주총회 참고자료 비치

-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 업개요 등 경영참고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함(상법 542조의4③)
 - 다만,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 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DART), 거래소(KIND)에 비치 등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통지 생략 가 능(상법 시행령 31조(5))

[경영참고사항]

-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 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내역 (상법 542조의9③ 각호)
-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참고서류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상법 시행령 31③)
-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8)-3 주식교환계약서등 비치 공시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의 사전공시 서류]

- 주식교환계약서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
- 주주총회의 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 산서
- 주식교환 당사회사는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 하는 날까지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응해야 함
 조

(8)-4 투자설명서 교부

○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교부하여 야 함(자본시장법 124조)

(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주식교환 반대의사 접수

-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해야 함(상법 360조의5, 자본시장법 165조의5)
 - 이사회 결의에 대해 주식매수점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명업일 전까지 신청하고, 예탹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의 신분을 취합하여 발행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밀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주주가회사에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전자등록

(10)-1 주주총회 개최 및 주식교환계약 승인

- 주식교환 승인결의는 특별결의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서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함(상 법 360조의3, 434조)
 - 주식교환 사회사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등 복수의 종류주식을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

- 별한 정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됨(상법 436조 → 435조)
-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과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상법 360조의3조 5항)

(10)-2 주주총회결과 공시 등

주식교환을 승민하는 주주총회가 종료되면 결의결과를 KRK에 공시해야 하며 상장규정 조,
 명의 개서대행회사 등에 통보해야 함

(11)-1 완전자회사 주권 실효 공고 · 통지

○ 전자등록주식등이 발행되지 않은 완전자회사는 주식교환을 한 날의 1월 전에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무효가 된다는 뜻과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함(상법 360조의8)

[주권의 실표절차 공고 및 통지 내용]

-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한 뜻
- 주식교환의 날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
-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 주식등을 전자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에서 주권의 분실 등으로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 록 이의가 없으면 해당 청구자에게 주식을 교부할 수 있음(상법 442조 1항). 이때 공고비용은 청구자 부담으로 함장(상법 442조 2항)
 -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배정됨. 주식교환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완전자회사의 주식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해야 하는데 이때는 자본감소에서의 절차를 준용함(상법 440~443조)
 - 자본감소에서의 절차를 준용함에 따라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신주를 경매하여 지급해야 함, 그러나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시장에서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음(상법 443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주의 상장초일종가를 단주대금기준가액으로 지급함

- 주식교환 등에 따라 전자등록되지 않은 주식(실물주권 등)의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등을 취득하게 될 경우 주권 제출, 계좌 개설 등 절차를 거쳐야 함(전자증권법 34조).
-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이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구주권제출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주식 교환일을 별도로 정하고, 그날에 기존 주식은 말소된다는 뜻을 그 2주간전에 공지하여야 함
 - 전자등록주식의 병합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은 없으나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11)-2 신규전자등록 등 의뢰

- 발행회사는 주주총회 후 주식교환 기준일을 공고를 하였으면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지체 없이 교환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환에 따른 신규전자등록을 의뢰해야 함.
 - 주식교환에 따른 신규전자등록의 효력은 교환기준일에 맞추어 진행

(12) 주식매수청구 접수 및 주식매수대금 지급

- 주주총회 회일 전까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주식교환을 승인한 주총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해야 함(상법 360조의5, 374조의2, 자본시장법 165조의5, 상장규정 56조①)
 - 거래 증권회사(계좌관리기관)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기 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서 통지신청서에 각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 주식 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에 신청함. 예탁원은 반대 의사 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함.
- 주식매수대금은 주식매수청구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해야 함(자본시장법 165조의5)
 - 주식매수 가격이 결정되면 매수청구자는 정해진 날에 거래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매수대 금을 수령함.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거 래 증권회사)에서 신청한 지분별로 배분하며 계좌에 입금합

(13) 주식교환일

-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지 아니한 완전자회사의 경우 주권실효 통지·공고 종료일 익일이 주식 교환 일이 되며, 주식교환일에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함
 - 주식들을 전자등록한 완전자회사의 경우 별도로 정한 주식교환일에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

생함

- 전자등록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전자등록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 주에게 전자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주권소멸회사 주주에 대한 공고 · 통지, 실물주 권 회수관리, 특별계좌 개설등 증권전자등록에 따른 절차와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수행 해야 함(전자종권법 34조)
-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로 이전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 의 주주에게 배정되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주로 전환되게 됨

(14) 주식교환관련 서류 사후 공시

○ 주식교환 후 주식교환 당사회사는 주식교환을 한 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을 한 날부 터 6월가 발행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에 응해야 함(상 법 360조의12)

(15)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등

ㅇ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즉. 주식교환을 완 료한 때에 지체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128조, 발행공시규정 2-19①-5-15)

- 모집 등 완료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공시(FSS)(자본시장법 128조, 발행공시규정 2조-19①)
- Check Point 유상증자 발행결과 확정시「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자 율적 공시 가능(KRX)(공시규정 28조, 동시세행세칙 8조)
- 주식교환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상장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한 때 즉,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주식교환에 지체 없이 합병등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함에 따라 증권 발행 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 우에는 합병 등 종료보고서의 제출은 면제됨 (발행공시규정 5-15조)

(16) 주식교환의 등기

-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자본증가의 변경등기를 해야 함
 - 다만,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이전하거나

전액 현금등 회사재산을 지급한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므로 자본변경등기가 불필요함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제공정보] (상업등기규칙 146조)

- 1.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정보
-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 주주총회의사록
- 4.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 을 증명하는 정보
- 5. 「상법」 제360조의7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 6. 「상법」 제360조의8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 7. 「상법」 제360조 제2항 또는 「상법」 제360조의10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8.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
- 9.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점보

(17) 지분변통 공시

- 주식교환으로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5%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주식교환일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FSS 및 KRK에 신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 147조, 동시행령 153조)
- 주식교환으로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경우에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자본시 장법 173조, 동시행령 200조③)
 - 특정증권등의 보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그 변동이 있는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자본시장법 시행령 200조④)
- 한편, 주식교환으로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상황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KRX에 신고하 여야 함

(18) 지주회사 설립신고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신고해야 함(공정거래법 8조, 동시행령 15조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 할등기일부터 30일 이내
-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 간이 지난 달부터 30일 이내
-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법연도 종료 후 4월 이내

(19) 주식교환신주 배정 통지 및 추가상장 신청

- ㅇ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지 아니한 완전자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하여는 주권의 실효절차가 종료되는 주권제출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주식교환신주를 배정하고 신주배정 내역을 통지 하여야 함
 - 주식들을 전자등록한 완전자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하여는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주식교환신주를 배정하고 신주배정 내역을 통지하여야 함
- 아울러, 상장회사는 주식교환에 따른 추가상장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상장회사가 증자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한 경우 추가상장하여야 하며, 추가상장신청은 해당 신주밬햇의 효력이 샛기 후(주식교환일) 지체없이 하여야 함(삿잣규정 43조)
 - 발행된 신주를 추가상장 하는 경우 추가상장예정일의 5거래일 전까지 거래소에 추가상장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상장규정 43조)

[추가상장 신첨시 첨부서류]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5)

- 추가상장신청서
- 신주의 발행 일정표
- 법인등기부등본
-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 기업민수목적회사주권의 경우 다음의 추가서류
 - 예치 · 신탁된 금전에 대하여 예치기관등이 발행한 지금 예치 · 신탁 확인서
 -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발행총액 확인서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간이주식교환 일정표

순서	절 차	대상처	목차
1	이사회결의 및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Ⅱ-2-(1)
2	반대의사표시 및 기준일 공고	신문/홈페이지(기준일 2주전 까지)	II -2-(2)
3	주식교환계약 체결	상대회사(간이주식교환 통지·공고일 2주전 이내)	II -2-(3)
4	주식매수청구절차, 주식교환계획 등 통보	대행사 등	Ⅱ -2-(2)
5	권리주주 확정 및 소유자명세 수령	대행사	Ⅱ-2-(1)
6	간이주식교환 공고(또는 통지)	대행사, 신문사·홈페이지 (주식교환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내)	II -1-(8)
7	간이주식교환계약서등 비치·공시	본점(통지·공고일 2주전~교환일 이후 6월 경과일)	Ⅱ-1-(8)
8	주식교환 반대의사 접수	대행사(통지공고일로부터 2주내)	Ⅱ -2-(2)
9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Ⅱ-2-(1)
10	완전자회사 주권 실효 공고(또는 통지)	신문사/홈페이지(주식교환일 1월전)	$\Pi - 1 - (11)$
11	반대 주식매수청구 접수	FSS(통지공고일로부터 2주 이후부터 20일 이내)	II -2-(2)
12	주식매수대금 지급	대행사(완료 후 1개월 이내)	Ⅱ-2-(2)
13	주식교환일(※효력발생)	실효절차 종료일 익일	Ⅱ-1-(13)
13	주식교환관련 서류 사후 공시	본점(주식교환일로부터 6월간)	Ⅱ-1-(14)
14	주식교환등기(자본금 변경 해당시 증자등 기)	법원(교환일로부터 2주 이내)	II -2-(3)

※ 위의 일정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인 것을 전제로 하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 등은 완전모회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제외함.

02. 간이주식교환

(1) 주주총회 승인 생략

- 상법에서는 주식교환의 간소화 차원에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 길의만
 으로 주식교환이 가능한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을 두고 있음
 - 간이 주식교환은 주식교환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만 적용되며, 완전모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요건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전체 주주로부터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함(상법 360조의 9)
-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가 별도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무상 일정 단축 등을 위하여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에 결의하는 경우가 있음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간이주식교환 적용요건 중 완전자회사의 전체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함. 그러나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도 반대주주가 있을 때에는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준수해야 함(상법 360조의5)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전체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교환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함(상법 360조의9)
 -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이란 이사회에서 계약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아야 하며, 주주들에게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하므로 주주가 확정된 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공고일 이후로 계약 체결일을 정하여야 할 것임. 즉 간이주식교환 공고 통지일로부터 2주전 이내이어야 함
 - 실무적으로 주주에게 통지하는 경우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공고 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주주는 이 공고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회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앞의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350조의5)

(3) 기타 일정

- 주식교환승인주주총회의 생략 및 간이주식교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 절차 이외의 주식교환절 차는 주식교환의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야 함
- 다만, 간이주식교환의 대상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간이주식교환요
 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보통 상장회사가 아닐 것임
 - 따라서 상장회사에만 해당될 수 있는 공지사항(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지분변동 공 시. 추가상장신청과 완전모회사에 해당될 수 있는 지주회사 전환신고 등의 절차는 해당되 지 않을 것임

⊙ 소규모주식교환 일정표

순	절 차	대상처	목차
서		"0"	' '
	이사회결의 및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1	주식교환 결의사항 공시	FSS(결의일로부터 3일 이내),	II - 3 - (2)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로 동시 이행	KRX(결의일 당일)	
2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신문/홈페이지(기준일 2주전 까지)	II - 3 - (2)
3	 소규모교환계약 체결	상대회사(주식교환 통지·공고일	II −3−(2)
3	조미조교환계탁 세설	2주전 이내)	11-3-(2)
4	주식교환계획 등 통보	대행사 등	Ⅱ −1−(4)
5	권리주주 확정 및 소유자명세 수령	대행사	Ⅱ-1-(6)
6	주식교환계약서 등 비치·공시	본점(통지·공고일 주전~교환일 이후	Ⅱ-1-(8)
0	구석교완계약시 등 미시·증시	6월 경과일)	11-1-(8)
		대행사,	
7	소규모주식교환 공고(또는 통지)	신문사/홈페이지(계약체결일로부터	II - 3 - (2)
		2주내)	
8	주식교환 반대의사 접수	대행사(통지공고일로부터 2주내)	II -3-(1)
9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완전자회사의 경우 구주권 실효 공고 또	가면 가/주네 라마(코 카르퀴 사 + Al al)	H 1 (11)
10	는 통지	신문사/홈페이지(주식교환일 1월전)	Ⅱ-1-(11)
	신규전자등록 등 의뢰	대행사	Ⅱ-1-(11)
11	주식교환일(※효력발생)	실효절차 종료일 익일	Ⅱ-1-(13)
12	주식교환관련 서류 사후 공시	본점 등(주식교환일로부터 6월간)	Ⅱ-1-(14)
13	합병 등 종료보고서 제출	FSS(주식교환등기신청서 제출)	Ⅱ-1-(15)
1.4	주식교환등기(자본금변경 해당시 증자등	비이(그취이크 바리 요즈 시네)	П 1 (10)
14	7])	법원(교환일로부터 2주 이내)	Ⅱ −1−(16)
15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	FSS(교환일 익일부터 5영업일 이내)	Ⅱ-1-(17)
16	임원 등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FSS(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Ⅱ-1-(17)
1.77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자산 1천억원	고리이	П 1 (10)
17	이상)	공정위	Ⅱ −1−(18)
1.0	주식교환신주 배정·통지 및 추가상장 신	네케기 IZDV	П 1 (10)
18	청	대행사, KRX	Ⅱ-1-(19)

※ 위의 일정표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가 비상장회사이며,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

03. 소규모주식교환

(1) 주주총회 승인 생략

- 대규모 회사와 소규모 회사가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대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주식교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요건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홍수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상법 360조10)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식교환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정식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필요함(상법 360조의 10)
 - i) 주식교환교부금이나 재산의 가액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ii)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주주가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
 - * 만약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주주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소규 모주식교환을 할 수 없고, 일반주식교환을 하여야 함에 따라 주식교환계획 등을 다시 체 문 후 진행해야 함
 -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가 별도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무상 일정 단축 등을 위하며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이사회에서 해당 내공을 포함히며 사전에 결의하는 경우가 있음

(2) 주식교환계약서 기재 및 주주에 대한 통지 · 공고시 특례

- 소규모주식교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주식교환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다는 뜻을 기재해야 함(상법 360조의 10)
- 또한 주주에 대한 공시절차로서 존속회사에서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주식교환을 할 날 및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없이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함(상법 300조의 10)
 - 위에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이란 이사회에서 계약서를 승인한 날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아야 하며, 주주들에게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하므로 주주가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공고일이후로 계약 체결일을 정하여야 할 것임. 꼭 소규모주식교환 공고통지일로부터 2주전 이내이어야 합

(3) 주식매수청구 불인정

○ 소규모주식교환 절차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상법 360조의10)

(4) 기타 일정

-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의 생략, 주식매수청구 불인정 이외는 주식교환의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야 함
 -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하더라도 매우 적은 물량만을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므로 증권신고서등은 제출하지 않을 것임

◉ 삼각주식교환 일정표

순	71 -1	ell 1151	n al
서	절 차	대상처	목차
1	자회사 설립(필요시)		Ⅱ-4-(2)
	이사회결의 및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2	주식교환 결의사항 공시	FSS(결의일로부터 3일이내),	Ⅱ-4-(3)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시 동시 이행	KRX(결의일 당일)	
3	삼각주식교환계약 체결	상대회사	Ⅱ-4-(4)
4	모회사 주식 취득		Ⅱ -4-(5)
5	증권신고서 제출(모회사가 제출)	FSS(효력발생 7영업일전)	II -4-(5)
5	필요시 예비투자설명서 함께 제출	F22(포틱철생 / 성립혈선)	п-4-(3)
6	주총 기준일 공고	신문/홈페이지(기준일 2주전까지)	Ⅱ-4-(3)
7	주식매수청구절차, 주식교환계획 등 통보	대행사 등	Ⅱ −4−(4)
8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FSS(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당일)	$\Pi - 4 - (5)$
0	(모회사가 제출)	TOS(% 단선포시 표탁들장을 장말)	11 4 (3)
9	권리주주 확정 및 소유자명세 수령	대행사	Ⅱ-1-(3)
10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시 참고서류 제출	FSS(소집통지 2영업일 전)	Ⅱ-1-(7)
	주총소집 통지·공고	대행사(총회 2주간 전)	
	무의결권/의결권제한 종류주주 포함		
11	주식교환 반대의사 접수	대행사(총회 전일까지)	Ⅱ-1-(8)
	주총 참고서류 제출·비치	본점 등(총회 2주 전)	
	투자설명서 교부(모회사가 교부)		
12	주식교환 반대의사 접수	대행사(총회 전일까지)	Ⅱ-1-(9)
13	주주총회 개최 및 주식교환계약 승인		Ⅱ-1-(10)
	주주총회결과 공시	KRX(주총 당일)	` ' '
14	주식교환 반대매수 청구 접수	주주	Ⅱ-1-(12
15	완전자회사 주권 실효 공고·통지	(주식교환일 1월전)	Ⅱ-1-(12)
1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완료에 따른 행사내역	FSS(청구권 행사 완료일 이후	II - 1 - (12)
	보고	지체 없이)	
17	주식매수대금 지급	대행사(매수청구후 1월 이내)	Ⅱ-1-(15)
18	주식교환일(※ 효력발생)	실효절차 종료일 익일	Ⅱ −1−(13)
19	주식교환관련 서류 사후 공시	본점(주식교환일로부터 6월간)	Ⅱ-1-(14)
20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모회사가 제출)	FSS(모집 또는 매출 완료시)	Ⅱ-4-(15)
	합병 등 종료보고서 제출	FSS(주식교환 완료시)	II-1-(15)
21	잔여 모회사 주식 처분	(삼각합병 이후 6월 내 처분)	$\Pi - 4 - (1)$

04. 삼각주식교환

(1) 삼각주식교환의 의의

- 주식교환의 대가로 당해 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상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아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삼각주식교환' 제도라 함
 - 2016년 3월 시행 개정상법은 주식교환계약서 기재사함으로 당해 회사의 주식외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즉, 모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상법 360조의3③4), 이를 위하여 원래는 취득할 수 없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함(상법 360조의3⑥)
 - 다만, 주식교환 이후 남은 모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없고,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함(상법 360조의3⑦)

(2)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교환각서 체결

- 삼각주식교환의 전제조건으로 자회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는 회사는 삼각주식교환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삼각주식합병은 완전자회사가될 회사와 주식교환을 한 자회사가 없는 경우 물적분할, 포 괄적 주식교환(이전), 현물출자 등을 이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하여 삼각주식 교환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어느 정도 소유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설립자금의 조달능력, 자회사에 소수주주가 존재할 경우의 부담감, 세제혜택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함
 - 삼각주식교환을 위해 모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이후 삼각주식교환계약체결의 거절하는 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절차 개시 전에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삼각주식교환 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약정을 체결해 놓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함

(3) 이사회 결의 및 주식교환계약서 작성

- 자회사와 대상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삼각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 때 교환 비율은 자회사 주식이 아닌 모회사 주식이 되므로 모회사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
 - 삼각주식교환의 경우에도 실질은 해당 회사 자산으로서 모회사 주식이 교환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당해 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비율을 원칙적으로 표시하여

야 하며, 모회사주식과의 교환비율을 부기 하는 것이 적절함

(4) 삼각주식교환 계약체결

- 삼각주식교환계약의 당사자는 자회사와 대상회사이며, 모회사의 경우 주식교환의 당사자가 아님
 - 실무적으로는 모회사를 포함한 3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주식교환의 대가로씨 모회사 주식의 내용(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여부, 종류주식의 경우에 그 권리내용)과 수 그리고 그 산정방식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게 됨

(5) 모회사의 주식 취득 및 교부

- 자회사가 기존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 교환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최소한 확정되어야 하므로 주식교환계약 체결 시 이후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함
- 삼각주식교환을 위하여 기존모회사는 자회사에 증자(신주 교부) 또는 자기주식 처분 자기주 식 교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기존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자기주식처분신고서 등 관련 공시를 이행 하여야 함. 이 경우 모회사 투자자들에게 삼각합병 등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삼각합병의 주요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회사의 경우에도 모회사주식 취득을 위하여 모회사 대상 신주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 배정 신주발행에 해당되므로 정관 근거 및 경영상 목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자회사가 기존모회사를 상대방으로 증자 참여하거나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거 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사전승인(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함(상법 398조)
- 삼각주식교환의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회사가 아닌 발행인인 기존모회사가 증권신고서등을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119조)

(6)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등

○ 삼각주식교환의 경우 당사회사인 자회사와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

- 부,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지 않은 완전자회사의 구주권 실효절차는 일반주식교환 절차와 동일 함
- 기존모회사의 경우 삼각주식교환과 관련하며 자회사에 신주발행(제3자배정) 또는 자기주 식을 제공해주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가 요구될 수 있음
- 삼각주식교환을 위하여 자회사가 모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는 자회사에 있어 자기거래로서 강화된 요건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상법 398조)

(7) 기타 일정

- 주식교환으로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경우 신주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절차 및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변경등기가 불필요하며, 지분변동도 없으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 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의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야 함
 - 다만, 사전에 기존 모회사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신주 발행을 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자본 변경등기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삼각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 대상회사가 우회상장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우회상장에따른 규제 해당 여부를 체크해야 함

Ⅲ. 주식이전 절차 해설

◉ 일반주식이전 일정표

순서	절 차	대상처	목차
	이사회결의 및 주식이전계획서 작성	DCC(범이이 이이) VDV(범이이	
1	주식이전 결의사항 공시	FSS(결의일 익일), KRX(결의일 당일)	Ⅲ-1-(1)
	주요사항보고서 당일 제출시 동시 이행	o ∃/	
2	증권신고서 제출(신설예정법인 이름으로)	FSS(효력발생 7영업일전)	I -2-(3)
	필요시 예비투자설명서 함께 제출	1,00(3.4 5.8 1.8 8 5.0)	Ⅲ-1-(2)
3	주총 기준일 공고	신문/홈페이지(기준일 2주전 까지)	Ⅲ -1-(3)
4	주식매수청구절차, 주식이전계획 등 통보	대행사 등	Ⅲ-1-(4)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FSS(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당일)	Ⅲ -1-(5)
6	권리주주 확정 및 소유자명세 수령	대행사	Ⅲ-1-(6)
7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시 참고서류 제출	FSS(소집통지 2영업일전)	Ⅲ-1-(7)

	주총소집 통지·공고 무의결권 및 의결권제한 주주 포함	대행사(총회 2주간 전)	
8	주식이전계획서 등 비치·공시	(주총 2주전-주식교환일 이후 6월 경과일)	Ⅲ-1-(8)
	주총 참고서류 제출·비치	총회 2주전	
	투자설명서 교부		
9	주식이전 반대의사 접수	대행사(총회 전일까지)	Ⅲ-1-(9)
10	주주총회 개최 및 주식이전계획 승인		П-1-(10)
	주주총회결과 공시	KRX(주총 당일)	
11	주식이전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 접수	대행사(총회 다음날부터)	Ⅱ-1-(12)
12	완전자회사 구주권 실효 공고·통지		Ⅱ-1-(11)
	(※전자등록의 경우 주식이전일 공고·통	(주식이전일 1월전)	
	지)		
	신규전자등록 등 의뢰	대행사	
1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 보고	FSS(행사 완료일 이후 지체 없이)	Ⅱ-1-(12)
14	주식매수대금 지급	대행사(매수청구 후 1월 이내)	Ⅱ-1-(12)
15	주식이전등기(※완전모회사 설립등기)	법원(납입기일부터 2주 이내)	Ⅱ-1-(13)
16	주식이전일(※효력발생)	완전모회사 설립등기시	Ⅱ-1-(13)
17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FSS(증권발행을 완료한 때)	Ⅱ −1−(14)
	합병 등 종료보고서 제출	FSS(주식이전일에 제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 의무없음		
18	주식이전관련 서류 사후 공시	주식이전일로부터 6월간	Ⅱ-1-(15)
19	주식이전 신주 배정·통지	대행사, KRX	Ⅱ-1-(16)
20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자산 1천억원	고거이	Ⅱ-1-(17)
	이상)	공정위	

01. 일반주식이전

(1)-1 이사회 결의 및 주식이전계획서 작성

-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법정기재사함이 기재된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식이 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함(상법 제360조의16)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는 편의상 주식 이전계획서를 상정 결의하여야 하므로 주식이진계획서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결의를 하게 됨

[주식이전계획서의 기재사항] 상법 360조의16

-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 2. 설립하는 관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방
-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 6. 화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는 그 뜻
- 주식이전의 날이란 주식이전을 할 시기를 말하며, 주식이전의 효력이 생기는 날과는 구분되는 개념임.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시기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설립등기를 한 날을 말함(상법 360조의21)
-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 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법 360조의18)

(1)-2 주식교환 결의사항 공시

- 상장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결의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 (공시규정 7조①3가(4))
 - 상장회사의 주식이전 중 지주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주식이전을 공시한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됨(공시규정 40조①2, 동 시행세칙 16조①6 및 ③2)
- 상장회사는 주식이전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와 이사회 의사록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 결의일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자본시장법 161조① 6호)

공시 Check Point

- 주식이전 결정시 익일까지 「주식이전 결정」 주요사항보고서 공시(FSS] 파본시장법 161조)
- 주식이전 결정시 당일까지 「주식이전 결정」 공시(KRX) (공시규정 7조①3가(4))
 - 금융위(FSS)·거래소(KRX) 공통 서식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이사회 당일날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거래소 공시의무 모두 충족.

(2) 증권신고서 제출 (신설예정법인 이름으로)

○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해야 함(자본시장법 119조, 동시행령 120조, 발행공시규정 2-10조) Check Point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에 실질적인 청약일정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효 력발생기간 및 정익일정 등을 고려하며 증권신고서 공시(FSS)(자본시장법 119조 10

(3) 주총 기준일 공고

ㅇ 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정하고 그로부터 2주간 전까지 회사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등)으로 설정사유 등을 공고해야 함(상법 354조②~④. 상법 289조③~⑧. 상법시행령 6조).

Check Point

공시 ●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 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주식명 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신고(KRX) (상장규정 § 79①1)

(4) 주식매수청구절차. 주식이전계획 등 통보

- 발행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의 주식매수청구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 구자의 자격, 매수가격, 접수시한,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등을 문서로 통보해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316조)
- 기준일 설정공고 후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주식이전계획 등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 해야 함

[대행사 통보시 첨부서류]

- 1. 주식이전 관련 이사회의사록 사본 1부
- 2. 주식이전계획서 사본 1부
- 3. 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사본 1부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 생한 후부터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 및 청약에 대한 승낙이 가능함(자본시장법 120조. 동시행규칙 12조 제1항)
 -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효력발생기간을 재계산함
-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공시(금융위)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본 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청약사무취급처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123조①, 동시행규칙 13조①)

공시 Check Point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투자설명서」 공시(FSS) (자본시장법 123조①)

(6) 권리주주 확정 및 소유자명세 수령

- 발행회사(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기준일 현재의 권리행사자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 작성에 필요한 소유자명세를 전자등록기관에 요청하여 이를 수령해야 함(전자증권 37조 1항).
 - 발행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전자증권법 37조 51.

(7)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시 참고자료 제출

- 의결정족수 확보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사전에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할 것 인지를 판단해야 함
 - 주주총회 안건이 주식이전인 경우에는 예탁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도(일명 '섀도우 보팅제')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유의해야 함(자본시장법 314조⑤3)

(8-1) 주주총회소집 공고 · 통지

-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해야(상 법 363조①)
 - 다만, 상장회사에 한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 이하를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2회 이상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수 있음 (상법 542조의4①), 상법시행령 10조 참조)
- 주식이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할 때는 다음 사항을 요약하여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또한 무의결권 또는 의결권제한 종류주주에게는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만은 통지해야 함(자본시장법 165조의5⑤)

[주식이전승인 주총 소집 통지 · 공고문의 기재사항] (상법 300조의16)

- 1. 주식이전계획서의 주요내용(위의 이사회 결의사항 참조)
- 2. 제36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 4. 감사보고서 · 사업보고서
 -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통지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명의개서대행회사와 협의 된 기한까지 주종소집 안내문, 주식이전의 개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등 첨부물을 인계해야 합

(8)-2 주식이전계획서등 비치 · 공시

○ 주식이전 당사회사는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이전의 날 이후 6월이 경과 하는 날까지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 및 등사 청구에 응해야 함(상법 360조의17)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의 사전공시 서류]

- 주식이전계획서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젂에 관하며 이유를 기재한 서면
- 주주총회의 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완전자화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 산서

(8-3) 주주총회 참고자료 비치

-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경영참고사항도 함께 통지하여야 함(상법 542조의4③)
 - 다만,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DART. 거래소(KIND)에 비치 등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통지 생략 가능(상법 시행령 31조⑤)

[경영참고사항]

-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내역(상법 제542조의 제3항 각호)

-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참고서류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상법 시행령 31조③)
-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8)-4 투자설명서 교부

○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124조)

(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주식이전 반대의사 접수

-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해야 함(상법 360조의5, 자본시장법 165조의5)
 - 이사회 결의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신첩하고,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등의 신청분을 취합하며 발행인에 대하여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주주가 회사에게 직접 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그 내역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함 (전자등록 업무규정 제55조).

(10)-1 주주총회 개최 및 주식 이전계획 승인

- 주식이전 승인결의는 특별결의의 방법에 의하여 주식이전계획서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함(상 법 300조의16. 434조)
 - 주식이전 사회사가 이익배당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주식이전으로 민하며 어느 종류의 주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별한 정함을 한경우에는 당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됨(상법 436조 → 435조)
 -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과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360조의16 4항)

(10)-2 주주총회결과 공시 등

• 주식이전을 승인하는 주주총회가 종료되면 결의결과를 KRX에 공시해야 하며(상장규정 5조),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통보해야 함

(10)-1 완전자회사 주권 실효 공고 통지

○ 주식이전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 발행되지 아니한 완전자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으면 주식이전의 날의 1월 전에 아래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상법 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 공고 및 통지 내용]

- 주식이전계획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한 뜻
-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
-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 주식등을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이전비울에 따라 완전모 회사의 주식이 배정됨. 주식이전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완전자회사의 주식 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해야 하는데 이때는 자본감소 에서의 절차를 준용합(상법 440-443조)
- 주식교환 등에 따라 전자등록되지 않은 주식(실물주권 등)을 소유자가 전자등록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전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 (전자증권법 34조).
-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그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이므로 구주권제출절차는 필요 하지 않고, 주식이전의 기준일에 기존 주식은 말소된다는 뜻을 그 2주간전에 공지하여 야 함
 - 전자등록주식의 병합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은 없으나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11)-2 신규전자등록 등 의뢰

- 주식이전 기준일을 공고하였으면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지체 없이 주식이전계획서 등 관련 서 류를 첨부하여 주식이전에 따른 신규전자등록(사전등록)을 의뢰해야 함.
 - 주식이전에 따른 신규전자등록의 효력은 이전의 효력발생일에 맞추어 진행

(1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완료에 따른 행사내역 보고 및 주식매수대금 지급

- 주주총회 회일 전까지 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주식교환을 승인한 주총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해야 함(상법 360조5, 374조의2, 자본시장법 165조5, 상장규정 56조①)
 - 거래 증권회사(계좌관리기관)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기 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서 통지신청서에 각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 주식 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에 신청함. 예탁원은 반대 의사 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함.
-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 청구내역을 FSS와 KRX에 지체 없이 문서로서 신고해야 함(상장 규정 56조)
- 주식매수대금은 주식매수청구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해야 함(자본시장법 165조의5)
 - 주식매수 가격이 결정되면 매수청구자는 정해진 날(주식이전일)에 주식매수대금을 수렴함. 전자 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거래 증권회사)에서 신청한 지분별로 배분하여 계좌에 입금함

(13)-1 주식이전일

- 주식이전의 날은 주식이전을 할 시기를 말하며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인 완전모회사 설립
 등기 일과는 구분되는 개념임.
 -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권실효 통지·공고 종료일 익일을 주식이전의 날로 정하고,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이전일을 주식이 전의 날로 정하고 효력발생시기도 일치하도록 모회사 등기일을 이 때에 맞추는 것이 일반 직임
 -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로 이전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되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주로 전환되게 됨
-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신주를 경매하여 지급해야 함. 그러나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시장에서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 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음(상법 443조)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주의 삼잠초일종가를 단주대금기준가액으로 지급함

(13)-2 주식이전에 따른 설립등기

- 주식이전으로 완전모회사가 설립되므로 완전모회사는 설립등기를 해야 함.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완전모회사 설립등기시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
 익일 또는 주식이전일에 설립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완전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변경한 경우에는 자본금변경등기가 수반되어야 함

[주식이전에 따른 설립등기시 제공정보] (상업등기규칙 147조)

-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 2.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 주주총회의사록
- 3.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 을 증명하는 정보
- 4.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 5.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겠음을 증명하는 정보
- 6. 제129조제1호(정관), 제10회(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및 제11회(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의 정보

(14)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등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128조, 발행공시규정 2-19조①)

[주권의 실효절차 공고 및 통지 내용]

- 모집 등 완료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FSS) 자본시장법 128, 발행공시규 32~197)
- 유상증자 발행결과 확정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자율적 공시 가능 (KRX)(공시규정 § 28, 동시행세칙 § 8)
- 주식이전신고서(주요사함보고서를 제출한 상장회사가 주식이전을 완료한 때, 즉 완전모회사 설립등기 이후에 지체 없이 합병등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병등 종료보고서의 제출은 면제됨(발행공시규정 제5-15조)

(15) 주식이전관련 서류 사후 공시

○ 주식이전 후 주식이전 당사회사는 주식이전의 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이전의 날부터 6 월간 발행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에 응해야 함(상법 360조의12)

(16) 주식이전 신주 배정·통지

-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지 아니한 완전자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하여는 주권의 실효절차가 종료되는 주권제출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이전신주를 배정하고 신주배정 내역을 통지 하여야 함
 -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완전자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하여는 주식이전일을 기준으로 주 식교화신주를 배정하고 신주배정 내역을 통지하여야 합
- ㅇ 아울러, 상장회사는 주식이전에 따른 추가상장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17) 지주회사 설립신고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에 신고해야 함(공정거래법 8조, 동시행령 15조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괴

- 지주회사를 설립회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 이내
-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화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 간 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겸우에는 당해 사업면도 좀료 후 4월 이내

(18) 기타

○ 상장회사가 주식이전에 따라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장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므로 삼장 폐지되며, 완전모회사를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상장 규정 26조~31조) 이달의 ----특 낍

2022 액면분할·액면병합·상호변경 실무해설

- 상장회사협의회 -

1. 액면분할

⇒ 액면분할 일정표

순서	절차	대상처	목차
	액면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I -2-(2)-1)
1	기준일 설정 이사회 결의		I -2-10-1)
1	시기천거시네요 고기 미 기그	기기사	I -2-10-1)
	이사회결의내용 공시 및 신고	거래소	I - 2 - (2) - 2
2	기준일 공고		I -2-10-2)
3	주식분할계획 통보	대행사	
4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5	주주확정 및 소유자명세 수령		
6	주주총회소집 통지(공고)	주 주	I -2-(3)
7	주주총회 개최		I - 2 - (4)
1	주주총회 결과 공시	거래소	-2-(4)
8	신주발행 및 전자등록 신청 의뢰	대행사	
0		예탁원	
9	분할기준일(전자증권법 제65조) 공고 · 통지		I -2-(5)
10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I -2-6)
11	주식매매거래정지		I -2-(5)
12	권리배정 기준일(신주배정 기준일)		
13	액면분할의 효력발생일(전자증권법상 병합기준일)		I -2-(7)
14	변경상장 신청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수령	예탁원	T 0 0)
		거래소	I -2-9)
15	지분공시(5% 보고 등)		I -2-(10)
16	변경등기	법원	I -2-(8)

※ 음영은 정관상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폐쇄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01. 액면분할의 의의 및 절차

(1) 의의

- '주식분할' 이란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자본금의 변동 없이) 발행주식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함
 - 액면분할은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분할(자본감소 제외)을 의미
- 주식분할로 발행되는 주식은 각 주주에게 지분비례로 배분되므로 주주의 입장에서 주식수의 변화만 있을 뿐 회사에 대한 지분율의 변화는 초래하지 아니함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액면주식('1주의 금액'이 정관에 기재되고 전자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주식분할은 액면가를 일정비율로 감소시키고, 그 역의 배수로 주식수를 늘리는 것(액면분할) 을 의미함
 - 주식분할(액면분할)은 예컨대 현재의 액면가 10,000원을 5,000원으로 분할하여 액면가 단위를 분할하면서 이에 따라 발행주식수를 2배로 늘리는 것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액면이 분할되는 비율만큼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므로 자본금(액면총액)은 변동 하지 아니함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무액면주식(정관 및 전자등록상 1주의 금액이 없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주식에 액면가가 없으므로 주식분할은 자본금증가 없이 회사가 종전의 주식을 세분화하여 발행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함

(2) 주식분할 절차

- 주식분할은 정관상 '1주당 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정관개정이 필요)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상법 제329조의2 제1항),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종류(액면주 식 또는 무액면주식)에 따라 주식분할시 필요한 절차에 차이가 있음
 - 주주총회의 안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주식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임시 주주총회 뿐만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결의가 가능함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액면주식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기재사항인 '1주당 금액'(액면가액, 제289조 제1항 제4호)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함(상법 제434조)
 - 주식분할 및 정관변경(1주의 금액) 모두 정관상 '1주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안건 내용이 동일하며 결의요건 또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같으므로 별도의 의안으로 결의할 필요 없이 '액면분할의 건' 또는 '정관변경의 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의하여도 무방함
- 주식분할시 분할 비율에 따라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에 대한 금전 지급 등으로 인해 자본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식분할 절차 외에 채권자보호절차도 필요하게 됨에 유의
 - 예컨대 액면가 5,000원을 2,000원으로 분할하는 경우 기존 주식 1주당 신주식이 2.5주가 배정되는데 1주 미만의 주식(단주)는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단주를 매각하여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함(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제443조 제1항)
 - 단주발생으로 자본감소를 초래하는 주식분할의 경우 자본감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자본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최고)하여야 함(상법 제439조 제2항)
- 종전에는 주식의 액면분할로 주권에 표시된 액면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주권교체를 위한 구주 권 제출 및 교체발행 절차가 필요하였으나(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제440조),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 이후 전자등록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병합기준일 효력발생일)에 주식이 분할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함(전자증권법 제65조).
 - 상법상 구주권 제출 및 교체발행 절차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한 반면, 전자증 권법에서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병합기준일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전 공고 및 통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보다 2주 정도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음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무액면주식의 경우 정관상 '1주의 금액(액면금액)' 이 없으므로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치 않 으며 주식분할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가능함

02. 액면분할 절차별 유의사항

○ 이하에서는 액면주식의 주식분할(액면분할) 중 자본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액면분할(단주 미

발생)의 실무절차에 대하여 기술함

(1)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확정(정관상 기준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 기준일 설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석 주주 확정을 위한 절차가 필요치 아니함
- 그러나 기준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는 참석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상법 제354조 제1항)
 - 주주명부 폐쇄는 명의개서 정지라고도 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명의개서를 정지하여 주주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준일의 설정이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병용하여 설정하기도 하나, 실무적으로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이면 충분하며 별도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2)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설정 공고

○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시 기준일 또는 폐쇄기간 초일의 2주전까지 회사의 공고방 법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354조 제4항), 거래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상 장규정 제79조 제1항 제1호)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조에 의거 0000년 ○○월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

중시 Check Point •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주식명의개서 정지(주주 명부폐쇄)」신고(KRX) (상장규정 \$7901)

(2)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1) 액면분할 관련 이사회 결의사항

가. 총회 소집 관련 사항

-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 결의함(상법 제362조)
 - (1)의 '참석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등 이사회 결의'를 주주총회 소집이사회에서 같이 결의하는 것도 가능함
- 주식분할 및 정관변경(1주의 금액)은 정관상 1주의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 내용 과 결의요건(특별결의)이 동일하므로 의안상정시 '액면분할의 건' 또는 '정관변경의 건' 중 하 나를 선택하여 결의하여도 무방함

나. 액면분할 관련 사항

- 주식분할을 위하여 ① 변경할 액면가액, ② 주식분할의 효력발생일 (전자증권법상 병합기준일) 등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액면가액은 균일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29조 제3항),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특정주식의 액면금액만 분할할 수 없음
- 주식분할시 주식의 액면은 종전 1주의 금액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상법상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29조의 제3항), 주식 분할 후의 1주 금액은 100원 이상이 되어야 함(상법 제329조의2 제2항)
 - 상장회사는 1주의 금액이 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 단위를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으로 정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이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함(상장규정 제162조 및 동 시행세칙 제130조)

다. 정관변경(안) 결의

- 액면분할의 경우 정관상 1주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주주총 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상법 제434조), 일반적으로 현행 정관과 변경된 정관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신구조문대비표 형식으로 정관개정안을 작성함
- 액면분할로 인한 발행주식수 증가에 따라 발행예정주식총수 잔여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관변경 시 발행예정주식총수 관련 조항도 함께 변경하여야 함

예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현행	변 경 (안)	비고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 액면분할을 위한 수권자본
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백만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천만	증가
로 한다.	주로 한다.	5/1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	- 액면분할을 위한 액면가액
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	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원으로 한다.	변경

2) 공시사항

○ 주주총회 개최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식분할에 대한 주식분할 결정' 공시를 이사회 결의일 당일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గి Check Point

-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 당일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KRX) (공시규정 8703라)
- 주주총회 소집결의 외에 주식분할에 따른 주식분할 결정』공시(KRX) (공시규정 8712가 (4))

(3)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명부상 의결권 있는 주주(상법 제363조 제7항)에게 소집통지 발송, 상장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 소유 주주에게는 전자공시(또는 신 문공고)로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동시행령 제31조 제1항)

공시 Check Point

- 1% 이하 주식 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갈음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FSS)
- 소집통지에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소집지),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을 통지하고,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정관 신구조문대비표 등)도 기재함(상법 제433조 제2항)

(4) 주주총회 개최 및 액면분할 결의

○ 액면분할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제434조) 출 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 및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함(상법 제434조, 제371조)

- 의결정족수를 위한 발행주식총수 산정에서는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 (상법 제344조의 3 제1항),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제2항), 상호주(상법 제369조 제3항)는 제외함
- 주주총회 종료 후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예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가 300주인 경우 특별결의 요건

- 주주총회 당일 180주 출석. 이 중 135주가 찬성한 경우
 - 의결정족수는 120주이며, 이를 넘는 135주가 찬성하였으므로 가결 [발행주식총수의 1/3(100주) & 출석주식수의 2/3(120주)]
- 주주총회 당일 120주 출석, 이 중 90주가 찬성한 경우
 - 의결정족수는 100주이며, 이에 미치지 못한 90주가 찬성하였으므로 부결 [발행주식총수의 1/3(100주) & 출석주식수의 2/3(80)]

ত্র Check Point • 주주총회 종료 후 개최 당일에 「정기(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KRX) (공시규정 \$7① 3라)

(5) 분할기준일 공고 · 통지

- 종전에는 주식의 액면분할로 주권에 표시된 액면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주권교체를 위한 구주 권 제출 및 교체발행 절차가 필요하였으나(상법 제329조의2 제3항, 제440조)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 이후 전자등록된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분할기준일 효력발생일)에 주식이 분할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함(전자증권법 제65조)
 - 상법상 구주권 제출 및 교체발행 절차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한 반면, 전자증 권법에서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분할기준일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전 공고 및 통지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보다 2주 정도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음

[전자증권 변경·말소 등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 효력발생일 2영업일 전부터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 정지(상장규정 15314)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 정배수 주식분할의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을 3매매일로 단축 가능
 - 첨부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대신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로 갈음
 - 신주의 효력발생일(전자증권법상 병합기준일)에 발행등록사실확인서(예탁결제원) 발급받아 제출

(6)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 이후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373조)
- 액면분할의 경우 등기사항인 '1주의 금액'이 변경되므로 등기신청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함(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따라서 의사록은 등기신청 기한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 공증을 위하여 주주총회 당일에 공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법인의사록의 공증방법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
-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

(7) 액면분할 효력발생

전자등록된 주식의 경우 상법 제441조에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전자증권법상 분할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함(전자증권법 제65조 제2항) - 전자등록기관 실무상 병합기준일은 영업일로 정하여야 함

(8) 변경등기

- 액면분할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 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 주식분할(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에 따른 '구주권제출관련 공고 및 통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전자등록된 주식의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법에 따른 공고 및 통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면 될 것임 (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

[변경등기사항]

-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변경한 경우에 한함)

(9) 변경상장

- 상장회사 상장주권의 액면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의 효력이 발생(전자증권법상 분할 기준일)한 후 지체없이 거래소에 변경상장을 신청하여야 함(상장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 변경상장을 하는 경우 상장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변경상장 신청시 첨부서류]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6

- 변경상장신청서
- 신주의 발행 일정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 상장수수료 납부내역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0) 지분공시

1)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

-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신규보고), 5% 보고 이후 기존 보고자의 주식등 의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변동보고)한 경우 5% 보고의무가 발생함(자본시장법 제147조)
- 주식 액면분할시 '보유수량만 증가할 뿐 '보유비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5% 보고'상 신규보 고 또는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2)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상장회사의 특정증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자본시장법 제 173조, 동시행령 제200조 제4항)

- ㅇ 다만, 주식 액면분할의 경우 해당 분할로 인해 주식수의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 지 변동보고의무가 유예됨(자본시장법 제173조, 동시행령 제200조 제6항 제3호, 제8항)
 - 전자등록된 주식의 액면분할은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전자증권법상 병합기준일)에 효력 이 발생하므로 그 날이 보고기준일이 됨에 유의 (전자증권법 제65조 제2항)

3)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

- ㅇ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동내용을 기재하 여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상장규정 제83조)
 - 다만, 동일한 소유주식 변동에 대해 5%보고 또는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보고를 해 당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행한 경우에는 소유주식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상장규정 제83조 제3항)
- ㅇ 주식의 액면분할로 인한 보고기준일은 주식의 소유권과 그 변동을 중심으로 판단(임원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의 기준일)하여 효력발생일(전자증권법상 병합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 2022 액면분할·액면병합·상호변경 실무해설

Ⅱ. 액면병합

● 액면병합 일정표

순서	절차	대상처	목차
1	액면병합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I-2-(2)-1)
	기준일 설정 이사회 결의		II-2-(1)-1)
1	이사회결의내용 공시 및 신고	111 >	II-2-(1)-1)
		거래소	II-2-(1)-2)
2	기준일 공고		II-2-(1)-2)
3	주식병합계획 통보	대행사	
4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5	주주확정 및 소유자명세 수령		
6	주주총회소집 통지(공고)	주 주	II-2-(3)
7	주주총회 개최		II-2-(4)
′	주주총회 결과 공시	거래소	II-2-(4)
8	신주발행 및 전자등록 신청 의뢰	대행사	
		예탁원	
9	병합기준일(전자증권법 제65조) 공고 통지	신문/회사홈페이지	II-2-(5)
10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II-2-(6)
11	주식매매거래정지		II-2-(5)

12	권리배정 기준일(신주배정 기준일)		
13	액면병합의 효력발생일(전자증권법상 병합기준일)		II-2-(7)
14	지분공시(5% 보고 등)		II-2-(11)
15	변경등기	법원	II-2-(9)
16	신주배정명세 작성 및 배정통지	대행사	
17	변경상장 신청	예탁원 거래소	II-2-(50)
18	단주대금 지급	대행사	II-2-(8)

[※] 음영은 정관상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폐쇄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01. 액면병합의 의의 및 절차

(1) 의의

- '주식병합(액면병합)' 이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액면병합이란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병합(자본감소 제외)을 의미
-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으로 신주권이 발행되고,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新주권을 교부받게 되면, 이에 따라 교환된 新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이 유지(대 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이에 따라, 구주식에 대한 질권자는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을 신주식과 금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339조)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이 정관에 기재되고 전자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병합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과, 자본금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병합(액면병합)으로 구분됨

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

- 주식병합을 하면서 액면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액면총액(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자본금 감소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자본감소를 할 수 있음
 -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에 해당됨(상법 제451 조)
 - 예컨대 10주를 1주로 병합하면서 액면금액 500원을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1/10만큼 감소하게 됨

- 자본금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의 경우 자본감소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 438조 제1항, 제434조) 및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를 거쳐야 함 * 주식병합방식의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은 본회 발간자료 '상장회사 자본감소 실무해설 참조
- 나.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주식병합(액면병합)
- 주식병합을 하면서 주식감소 비율에 따라 액면금액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액면총액(발행주식 총수×액면금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자본금도 변하지 아니함
 - 예컨대 10주를 1주로 병합하면서 액면금액 500원을 5,000원으로 병합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액면총액)에 변동이 없음
- 이 경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1주의 금액(액면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며, 주식병합과 액면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따른 필요한 절차가 요구되나,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요치 아니함

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 액면가액이 없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자본금과 주식수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 으므로 무액면주식을 병합하더라도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음
 - 따라서, 무액면주식의 병합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족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봄. 다만, 무액면주식의 병합과 동시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자본 금감소에 관한 규정(상법 제438조,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 절차 등을 거쳐야 함

(2) 액면병합 절차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액면병합의 경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인 1주의 금액(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

2) 단주 처리절차

○ 주식병합은 병합비율과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병합 이후의 1주에 미달하는 단수 의 주식, 즉 단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수주 주주에 대하여는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지급하는 절차가 필요함

3) 채권자보호절차

- ㅇ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함
 - 주식병합의 효력은 회사가 정한 병합기준일(전자증권법 제65조)에 발생함. 따라서 액면주식의 액면을 그대로 두고 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이므로 병합기준일 이전에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전자증권법 제65조 제2항)

(3) 위법한 주식병합

- 주식병합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자본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위법한 주식병합은 '감자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음(상법 제445조)
 - 판례도 액면을 병합하는 주식병합, 즉 자본금감소가 수반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해서도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중시하여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를 유추적용하고 있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5520 판결). 다만, 이러한 소는 주식병합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제소되어야 함

(4)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

- 주식병합은 발행주식총수 및 발행예정주식총수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자본금 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해야 함(상법 제317조 제2항 제1·2·3호). 따라서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 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변경등기를 해야 함(상법 제183조, 제317조 제3항)
 - 자본금 감소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주주총회의사록, 채권자보호절차증명서, 병합기 준일 (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에 관한 공고증명서 등을 첨부(상업등기규칙 제142조)

(5) 자본금 감소의 차익

-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으로 감소된 금액이 주금의 반환 및 결손 전보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을 감자차익 또는 감자잉여금이 발생함.
 - 이러한 감자차익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자본금 수정의 결과로 생긴 것으로 그 전액을 회사의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상법 제45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

2. 액면병합 절차별 유의사항

ㅇ 이하에서는 자본금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고 주식수 감소 비율만큼 액면주식의 가액을 인상하 는 형태의 주식병합(액면병합)에 관하여 기술함

(1)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확정

1)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설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 o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 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석주주 확정을 위한 절차가 필요치 아니함
- 그러나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 회)에는 참석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상법 제354조 제1항)
 - 주주명부 폐쇄는 명의개서 정지라고도 하며 일정한 기가 동안 명의개서를 정지하여 주주 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준일의 설정이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 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함
 -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병용하여 설 정하기도 하나, 실무적으로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이면 충분하며 별도 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2)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설정 공고

ㅇ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시 기준일 또는 폐쇄기간 초일의 2주전까지 회사의 공 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354조 제4항). 거래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상 장규정 제79조 제1항 제1호)

예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조에 의거 0000년 0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액면병합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 0000년 00월 0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ㅇㅇㅇㅇ

•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주식명의개 서정지(주주 명부폐쇄) ₁ 신고(KRX) (상장규정 \$79①1)

(2)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1) 액면병합 관련 이사회 결의사항

가. 총회 소집 관련 사항

-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 결의함(상법 제362조)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시 (1)의 '참석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등 이사회 결의'를 주주총회 | 소집이사회에서 같이 결의하는 것도 가능함

나. 액면병합 관련 사항

- 액면병합을 위하여 ① 병합할 주식 비율, ② 변경할 액면가액, ③ 액면병합을 위한 효력발생 일 (전자증권법상 병합기준일) 등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야 함
 - 주식의 액면가액은 균일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29조 제3항),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특정주식만 병합할 수 없음
- 액면병합시 주식의 액면은 종전 1주의 금액보다 인상된 가액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상장회사는 1주의 금액이 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 단위를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으로 정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이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함(상장규정 제162조 및 동 시행세칙 제130조)

다. 정관변경(안) 결의

○ 액면병합의 경우 정관상 1주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정관과 변경된 정관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신구조문대비표 형식으로 정관개정안을 작성함

예시

액면병합을 위한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조에 의거 0000년 0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액면병합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

현행	변 경 (안)	비고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액면병합을 위한 액면가액 변경

2) 공시사항

- 주주총회 개최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병합 결정' 공시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때, 주식병합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감자 결정"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Point

- 공시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가 있은 때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KRX) (공시규정 §7①3라)
- Check 주주총회 소집결의 외에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병합 결정 공시(KRX) (공시규정 § 7①2가 (4))

(3)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명부상 의결권 있는 주주(상법 제363조 제7항,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에게 소집통 지 발송, 상장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 소유 주주에게는 전자공시(또는 신문공고)로 소집통지 갈음가능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동시행 령 제31조 제1항)

1% 이하 주식 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갈음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FSS)

○ 소집통지에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소집지),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을 통지하고, 액면병합을 위한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정관 신구조문대비표 등)도 기재함(상법 제433조 제2항)

(4) 주주총회 개최 및 액면병합 결의

- 액면병합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여야 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 및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상법 제434조, 제371조)
 - 의결정족수를 위한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제2항), 상호주(상법 제369조 제3항)는 제외함

예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가 300주인 경우 특별결의 요건 예시

- 주주총회 당일 180주 출석, 이 중 135주가 찬성한 경우
 - 의결정족수는 120주이며, 이를 넘는 135주가 찬성하였으므로 가결 [발행주식총수의 1/3(100주) & 출석주식수의 2/3(120주)]
- 주주총회 당일 120주 출석, 이 중 90주가 찬성한 경우
 - 의결정족수는 100 주이며, 이에 미치지 못한 90주가 찬성하였으므로 부결 [발행주식총수의 1/3(100주) & 출석주식수의 2/3(80주)]

공시 주주총회 종료 후 개최 당일에 정기(임시) 주주총회 결과 공시(KRX) (공시규정 § 7①3 Check Point 라)

○ 주주총회 종료 후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5) 병합기준일 공고 통지

- 종전에는 액면병합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병합을 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 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야 하나 (상법 제440조),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 이후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병합기준일=효력발생일) 에 주식이 분할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 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함(전자증권법 제65조)
 - 상법상 구주권 제출 및 교체발행 절차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도록 한 반면, 전자증 권법에서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병합기준일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 전 공고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보다 2주 정도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음

전자증권 변경 · 말소 등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 효력발생일 2영업일 전부터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 정지(상장규정 § 15③14)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 정배수 주식분할 등의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을 3매매일로 단축 가능
 - 그러나 주식병합의 경우 단수주 발생 등으로 인해 기간 단축 불가

(6)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 이후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373조)
- 액면병합의 경우 등기사항인 '1주의 금액'이 변경되므로 등기신청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함(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따라서 의사록은 등기신청 기한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 공증을 위하여 주주총회 당일에 공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법인의사록의 공증방법]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
-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

(7) 액면병합 효력발생

- ㅇ 액면병합의 효력은 회사가 정한 병합기준일에 발생함(상법 제441조, 전자증권법 제65조)
 - 전자등록기관 실무상 병합기준일은 영업일로 정하여야 함

예시

액면병합에 따른 공고문안 예시

액면병합에 대한 공고 당사는 2000년 ○월 ○일 개최된 제○○기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식 ·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병합기준일인 2000년 ○월 ○일에 액면금액 200원의 보통주식 5주가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공고합니다.

- 다음 -

- 1. 액면병합에 관한 사항
 - 가. 액면병합 후 발행주권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주
 - 나. 액면병합 방법 : 기명식 보통주식 1주의 금액 200원을 1,000원으로 액면병합
 - 다. 주주총회일 : 20○○년 ○월 ○일
 - 라. 액면병합 기준일(효력발생일) : 20○○년 ○월 ○일
 - 마.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 후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단수주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 3. 기타 유의사항
 - 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구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

(8) 단주의 처리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수주의 경우에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주주에게 지급하여 야 하므로 거래소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여 함(상법 제443조)
 - 상장회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장초일종가를 단수주대금 기준가액으로 지급함.

단주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행사에 단주대금 기준가를 통보하고, 단주대금 지급의뢰를 한후 단주대금을 입금하면, 대행사에서 단주대금을 주주에게 지급하게 됨.

(9) 변경등기

- 액면병합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 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 주식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구주권제출관련 공고 및 통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전자등록된 주식의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법에 따른 공고 및 통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임(전자증권법 제65조)

[변경등기사항]

- 1주의 금액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10) 변경상장

- 상장회사 상장주권의 액면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의 효력이 발생(전자증권법상 병합 기준일)한 후 지체없이 거래소에 변경상장을 신청하여야 함(상장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 변경상장을 하는 경우 상장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변경상장 신청시 첨부서류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6

- 변경상장신청서
- 신주의 발행 일정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 상장수수료 납부내역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1) 지분공시

1)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보고)

-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신규보고), 5% 보고 이후 기존 보고자의 주식등 의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 (변동보고)한 경우 5% 보고의무가 발생함(자본시장법 제147조)
- 액면병합시 '보유수량만 감소할 뿐 '보유비율' 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5% 보고' 상 신규보고 또는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2)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상장회사의 특정증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자본시장법 제 173조, 동시행령 제200조 제4항)
- 다만, 액면병합의 경우 해당 병합으로 인해 주식수의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동보고의무가 유예됨(자본시장법 제173조, 동시행령 제200조 제6항 제3호, 제8항)
 - 주식의 액면병합은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전자증권법상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함 (전자증권법 제65조 제2항)

3)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

-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동내용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상장규정 제83조)
 - 다만, 동일한 소유주식 변동에 대해 5%보고 또는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보고를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행한 경우에는 소유주식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수 있음(상장규정 제83조 제3항)
- 주식의 액면병합으로 인한 보고기준일은 주식의 소유권과 그 변동을 중심으로 판단 (임원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의 기준일) 하여 전자증권법상 병합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Ⅲ. 상호변경

● 상호변경 일정표

순서	절차	대상처	목차
	상호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III-2-(2)-1)
1	기준일 설정 이사회 결의		III-2-(1)-1)
1	시기원거시네요 고기 미 기그	ગો ગો ઢ	III-2-(1)-1)
	이사회결의내용 공시 및 신고	거래소	II-2-(2)-2)
2	기준일 공고		III-2-(1)-2)
3	상호변경 계획 통보	대행사	
4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5	주주확정 및 소유자명세 수령		
6	주주총회소집 통지(공고)	주 주	III-2-(3)
7	주주총회 개최		III-2-(4)
1	주주총회 결과 공시	거래소	111 2 (4)
8	상호변경의 효력발생일(정관변경의 건 가결시)		III-2-(5)
9	상호변경에 따른 신주발행 의뢰	대행사	
10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III-2-(6)
11	변경등기	법원	III-2-(7)
12	변경상장 신청	거래소	III-2-(9)

※ 음영은 정관상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폐쇄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01. 상호변경의 의의 및 절차

(1) 의의

- '상호'란 회사가 경제활동을 위해 그 개성을 표시하고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임
 - 주식회사는 상호 중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삽입하여야 함(상법 제19조)
 -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영업(예컨대, 은행·보험·증권)은 상호에 업종까지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상호변경'은 이미 사용중인 상호 사용금지 및 거래 상대방의 보호 등을 위한 제한이 있음(상 법 제18조 내지 제24조)
 - 예컨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이하 동일)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음(상법등기법 제29조 및 제30조)
- ㅇ '상호변경'은 영업활동의 강화,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정관변경 등

의 절차를 거쳐 수시 임의로 가능함.

[계약 · 거래상대방 법인의 상호변경]

- 회사의 상호변경 이후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과의 계약 또는 거래관계의 유효성
 - 법인의 상호변경 이후라도 법인의 동일성은 여전하므로, 기존 거래 내지 계약관계에는 영향이 없이 그대로 유효함. 이에 별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할 의무는 없음.
- 상호변경의 전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에 舊상호가 붉은 글씨로 처리(朱)된 상태로 표기되나, 법인등기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함.

(2) 상호변경 절차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기재사항인 '회사의 상호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 야 함(상법 제434조)

2. 상호변경 절차별 유의사항

(1)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확정

- 1)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설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 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석주주 확정을 위한 절차가 필요치 아니함
- 그러나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는 참석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상법 제354조 제1항)
 - 주주명부 폐쇄는 명의개서 정지라고도 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명의개서를 정지하여 주주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준일의 설정이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병용하여 설정하기도 하나, 실무적으로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설정이면 충분하며 별도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2)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설정 공고

○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시 기준일 또는 폐쇄기간 초일의 2주전까지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354조 제4항), 거래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상 장규정 제79조 제1항 제1호)

예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조에 의거 0000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직인생략) 명의개서 대리인 ○○○○

중시 Check Point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주식명의개 서정지(주주 명부폐쇄)」 신고(KRX) (상장규정 §79①1)

(2)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1) 상호변경 관련 이사회 결의사항

가. 총회 소집 관련 사항

-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 결의함(상법 제362조)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시 (1)의 '참석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등 이사회 결의'를 주주총회 소집이사회에서 같이 결의하는 것도 가능함

나. 상호변경 관련 사항

- ㅇ 이사회는 변경할 상호에 대하여 유사상호여부 등 법률상 제한사항을 검토하여 함
 - 유사상호는 등기소(www.iros.go.kr)에 상호검색신청서를 제출하며 검색하며, 회사는 등기 관의 동일상호 또는 유사상호 여부의 판단을 근거로 상호변경의 가능여부를 검토하게 됨
 - ▶ 전자공고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공고방법인 홈페이지의 주소(URL)등이 함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
- 상호 변경시 해당 상호는 ① 다른 회사, 다른 상인과 차별할 수 있는 명칭을 포함하여야 하고, ② 적격성 및 영리성이 있어야 하며 ③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됨

- 회사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를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598호, 시행 2016.6.11.자)상 허용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한자,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부호를 병기할 수 있음
- 해당 상호 및 목적 등은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47호, 시행 2014.11.21.자)에 따라,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 등기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하여야 함

다. 정관변경(안) 결의

- 상호변경의 경우 정관상 '상호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주 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정관과 변경된 정관을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신구조 문대비표 형식으로 정관개정안을 작성함
-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회사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정관상 공고방법을 '회사 의 홈페이지'에 하는 전자공고 도입 회사는 공고방법에 관한 조항도 함께 변경하여야 함

예 시

상호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작성 예시

현행	변 경 (안)	비고
제1조(상호) 이 회사는 000주식회사 라 한다. 영문으로는 000이라 표기 한다.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 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AAA라 표 기한다.	-상호변경을 위한 조문 변경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 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OOO)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OO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한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 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AAA)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 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 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OO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한다.	-상호변경에 따른 회사의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변경 사항 반영

2) 공시사항

 주주총회 개최 결의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이사회 결의일 당일에 거래소에 제출 하여야 함

공시 Check Point •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 당일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KRX) (공시규정 § 7①3 라)

(3)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명부상 의결권 있는 주주(상법 제363조 제7항,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에게 소집통지 발송, 상장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 소유주주에게는 전자공 시(또는 신문공고)로 소집통지 갈음가능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동시행령 제31조 제1항)

공시 • 1% 이하 주식 소유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갈음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Check Point (FSS)

○ 소집통지에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소집지), 회의의 목적사항(의안)을 통지하고, 상호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정관 신구조문대비표 등)도 기재함(상법 제433조 제2항)

(4) 주주총회 개최 및 상호변경 결의

- 상호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제434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 및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상법 제434조, 제371조)
 - 의결정족수를 위한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제2항), 상호주(상법 제369조 제3항)는 제외함

예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가 300주인 경우 특별결의 요건

- 주주총회 당일 180주 출석, 이 중 135주가 찬성한 경우
 - 의결정족수는 120주이며, 이를 넘는 135주가 찬성하였으므로 가결 [발행주식총수의 1/3(100주) & 출석주식수의 2/3(120주)]
- 주주총회 당일 120주 출석, 이 중 90주가 찬성한 경우
 - 의결정족수는 100주이며, 이에 미치지 못한 90주가 찬성하였으므로 부결 [발행주식총수의 1/3(100주) & 출석주식수의 2/3(80)]
- 주주총회 종료 후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공시 주주총회 종료 후 개최 당일에 「정기(임시) 주주총회 결과, 공시(KRX) (공시규정 **§**7 Check Point ①3라)

(5) 상호변경의 효력발생시기

○ 상호의 효력발생은 정관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의 건을 승

인한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등기시점은 효력발생과 무관함

- 다만, 정관 부칙에 해당 내용의 시행시기를 달리 정하거나 감독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 는 경우 예외

(6)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 이후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상법 제373조)
- 상호변경의 경우 등기사항인 '회사의 상호가 변경되므로 등기신청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함(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따라서 의사록은 등기 신청기한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 공증을 위하여 주주총회 당일에 공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법인의사록의 공증방법]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
-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

(7) 변경등기

- 상호변경시 별도의 효력발생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 (등기의 배척)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 호로 등기하지 못함(상법 제22조)
- (입증책임의 전환)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함(상법 제23조 제4항)
- (폐지의제)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의제함(상법 제26조)
-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상법 제27조)

[등기할 수 없는 상회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3조

-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
-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 【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 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법 제38조 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
-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예시】 상호에 외설스러운 무자를 사용한 경우
-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 는 경우
- ※ 한 상인이 악의적으로 다른 상인이 상호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막고, 상인의 생성과 유지를 원활히 하기 위함

(8) 변경상장

- 상장회사 보통주권의 종목명(상호)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의 효력이 발생한 후 지체없이 거래소에 변경상장을 신청하여야 함(상장규정 제46조 제2항)
- 변경상장을 하는 경우 상장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변경상장 신청시 첨부서류]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6

- 변경상장신청서
- 신주의 발행 일정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 발행등록사실확인서
- 상장수수료 납부내역
-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하반기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국세청 -

1.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 등록이란?

-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 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허가, 신고)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 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의 경우)

•신탁 계약서 1부

(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신탁재산 사업자등록의 경우)

■ 임대주택 명세서 1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 ▷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 가(신고, 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 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 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 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2.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차명계좌란?

-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 용에 해당됩니다.
 -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을 말하며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 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 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게좌를 사용해야 함(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신고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기 관으로부터 협조받아 정밀하게 분석하기에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세무상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납부할 세액 이외 고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 고발되어 처벌되는 등 신분 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신고가 될 경우 세 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영세사업자'도 차명계좌를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고액의 세금이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이용 방법

■ 홈택스란?(www.hometax.go.kr)

-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납부, 증명 발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종합서비스입니다.
- 회원 가입

- ①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통해 회원 가입 ※ 공동·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통한 본인인증 필요
- ② 세무서 방문 가입: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와 신청자(대표자)의 신분증 제출
-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 분증

■ 홈택스를 통한 세금신고

- 인터넷으로 각종 국세*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원천세, 교육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전자신고 시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 1만원,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

■ 홈택스를 통한 세금납부

- 은행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홈택스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은행 계좌번호, 카드번호 입력, 하여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 내역, 민원처리 결과, 우편물 발송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세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이용안내 : 홈택스(hometax.go.kr) → Mv홈택스(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민원분야 서비스

즉시발급 증명 민원	▶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 15종 발급 신청 * 2020년 1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도 제공
사실증명 신청	▶ 사실증명(12유형)에 대해 발급 신청* 신청 후 3 근무시간 내 처리(사실 여부 검토 필요)
민원신청 조회 · 팩스전송 · 전자문서 지갑	▶ 홈택스 또는 모바일로 신청한 사무 모두 조회 증명민원을 팩스로 전송하거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 저장 가능
민원서류 발급 제한(해지)신청	▶ 타인이 부당 발급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비스

민원증명 원본 확인 (수요처 조회)	▶ 발급번호 혹은 바코드로 원본 확인
민원실 대기인원 조회	▶ 별도 로그인 없이 실시간 대기인원 조회
민원증명 발급 예약(방문 수령)	▶ 민원증명을 예약신청하고 편한 시간(평일 09:00~18:00)에 방문 수령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 사업자등록(개인·법인) 신청 또는 정정신고 서비스
휴·폐업 신고	▶ 휴·폐업 신고하는 서비스
재개업 신고	▶ 휴업 중인 사업자가 사업 재개 신고 가능
일반신청 민원	▶ 신고 기한연장, 징수유예, 송달장소 신고 등 108종 민원 신청
불복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 신청 등 불복청구 관련 25종

4.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 방법

■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93101			빝	날급 창	구		
국세증명	온라인 발급시간	방문	홈택 스	모바 일	무인 민원	정부 24	민원 우편	어디 서나
① 사업자등록증명② 휴업사실증명③ 폐업사실증명	연중무휴 24시간							
① 납세증명서 ② 납부내역증명 ⑥ 소득금액증명 ⑦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중무휴				0	0	0	
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용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증명서 청년희망적금가입용	08:00 ~ 22:00	0	0	0	×	0 0 ×	×	×
□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0	\supset	0
⑤ 모범납세자증명⑥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중무휴 24시간				0			
⑰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⑮ 유 형					0	0	0	0
사실 (1) 신고사실 없음 증명 (2) 사업자등록사실여부		0		0	×			

	(3) 체납내역								
	(4)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5) 사업자등록변경내역								
	(6) 대표자등록내역								
	(7) 공동사업자내역	[신청]							
	(8)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	연중							
	호 직권말소	09:00 ~							
	(9) 전용계좌개설여부	24:00							
15	(10)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1)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		0	\circ	\circ	×	×	×	×
증명	실여부	[발급]							
		근무시간							
		3시간 내							
	(12) 총사업자등록 내역	(신청 후)							
	(10) 5 7 1 7 5 3 1 1								

- ※ 영문 증명은 ① ~ ⑧, ⑬, ⑯이 가능하며, 방문과 홈택스, 모바일에서 발급함
- ※ 영문사실증명은 (2), (5), (6), (7) 가능(방문, 홈택스, 모바일에서만 신청·발급)

발급 창구	이용방법				
방문	세무서 민원실 또는 지자체 통합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① ~ ④, ⑮는 공동·금융공인인증서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불필요			
무인민원	주민번호 및 지문인식,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대표자) 이용가능				
민원24	정부24(gov.kr)에서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민원우편	우체국에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우편요금 발생)				
어디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 ▶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 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기한

개인사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 3.31.
업자	의무발행 업종	사업 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 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 6. 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 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거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 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 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밑줄 친 업종은 2022.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사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서비스업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н 71 О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 건 업	수의업
숙박 및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
음식점업	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한정)
70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교육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시미그립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
	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기타업종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
기되日이	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
	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액자, 주방용 유리제품, 관상용 어항 소매 한정), 안경 및 렌즈 소매
	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

기타업종

타 미용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 현금영수증을 가공·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 ▶ 2019. 1.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2018. 12. 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계산대나계산대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음식 · 숙박업 간이사업자	그 외 사업자
'21.1.1~'21.6.30	2.6%	1.3%
'21.7.1~'23.12.31.	1.3%	1.3%
'24.1.1.~	1%	1%

- ※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 납부세액 한도)

-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 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 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14. 6. 30 이 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금액의 20% (한도 : 건당 50만원,
발급거부	의무발행업종외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원호·선정 50원원, 연간 200만원)

부가가치세 안내

■ 부가가치세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무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 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을 다음 해 1.1.부터 2.1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 분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¹⁾ 미만이고 간이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²⁾	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²⁾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세뉴계산시 필급	열립시구 있다	이상 ³⁾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배급세력 등세	선탁6세	매입액(공급 대가)×0.5%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적용 배제		

- 1)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 2) 광업·제조업·도매업 및 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직 사업자·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간이과세 배제 기준(종목·부동산 매매업·과세 유흥장소·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3)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신고·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업 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6.30.	1.1.~6.30. 까지 사업실적	7.1.~7.25.
달반자세사	제2기 7.1.~12.31.	7.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 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 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제외)하며,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 형태 및 요건	예정신고 기간	예정신고 납부기한
일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4.1. ~ 4.25.
반	오는 납구세액이 적진 과제기간의 중납가액 모든 납구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2기 예정신고(7.1.~9.30.실적)	10.1. ~ 10.25.
간 이		예정부과기간 (1.1.~6.30. 실적)	7.1. ~ 7.25.
,	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신고의무 부여)	, , , , , , , , , , , , , , , , , , , ,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확정 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워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예정 고지)
- ▶ 시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때 신고불성 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국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세액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급대가)×0.5%)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업 종	부가 가치율	업 종	부가 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¹⁾ ,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1)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2)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6-1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대상	전자발급 의무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일 부터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개인사업자	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	7.1.~그 다음 해 6.30.
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	* 2020년 3억원 이상 : 2021.7.1.~2022.6.30.
	* 2021년 2억원 이상 : 2022.7.1.~2023.6.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 *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2019. 1. 1.부터 시행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

-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 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 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 은 가능)

■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함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 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④ 작성연월일
- * 일반과세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 무 부여
-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 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런 경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 선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을 판매하는 사 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 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 ⇒ 조회/발급 사업자 상태
- ⇒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접속·'마크애니'검색·설치

- ⇒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 표출 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대조

■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 ▶ 거짓 세금계산서란?
 - 재화 ·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3%에 상

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 안내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 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종합소득세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21년 귀속 소득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_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장부의 비치·기장

-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 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ᄀᆝᆏᅐᅡᆸᆌᄼᅡᅱ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간편장부대상자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업 종 구 분	직전년도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7천5백만원

-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 ※ 기준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 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 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20%) 적용배제
- ▶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 ▶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제도

- ▶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는 거래대금·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신고기한 : 1.1. ~ 6.30.(신규), 확정신고 기한까지(변경, 추가)
-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 □)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 ①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 128 ④)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 기준(단순)경비율 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 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 경비율의 적용방법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21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 ①	⇒ ①, ② 중
•[소득금액-구립금액-구요경비-(구립금액^기군경비률)*1]···①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2]···②	적은 금액으로
•[소극금액= {구입금액-(구입금액×년군경미팔/) × 매팔*2] ··· ② 	선택 가능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2 2021년 귀속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 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구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당해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2천4백만원	7천 5백만원

※ 적용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2022년 5월 (2021년 귀속) 신고시, 직전연도(2020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3천 6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년도 신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단,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의 종류

-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사업장현황신고란?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 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 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대상

-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 * 아래 가산세 대상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 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 제출서류

-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 1. 사업자 인적사항
 -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3.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 4.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 적용대상 :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 ③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 ▶ 가산세액 : 무신고(과소신고)수입금액 × 0.5%

주택임대소득 과세 안내

■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 적으로 비과세하였습니다.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기준

- ▶ 보유 주택수별
 - 1. (1주택) 국외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2.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3.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 넘는 경우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m²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 외(2023년까지)

■ 사업자등록

- ▶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2021년 신고)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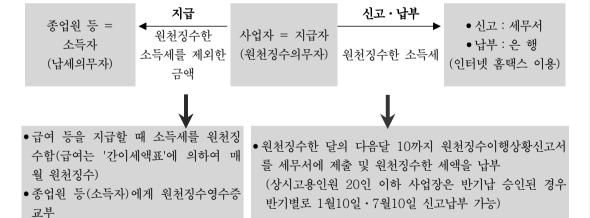
■ 소득세 신고방법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6~45%)와 분리과세(세 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6~45%)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0

■ 원천징수란?

▶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근로·퇴직·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등

■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

▶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각소득별, 지급명세서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소득 구분	지급명세서 제출	
상용 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788 CEAT	•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기어오드(보기크 고장)	•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퇴직·종교인소득	• 다음 연도 3월 10일	
기타 · 연금 · 이자 · 배당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 득)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 물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소득 (예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0.125%

해당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사업(봉사료 포함)·퇴직·종교인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
기타 · 연금 · 이자 · 배당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 지급명세서의 제출방법

-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지급명세서」서식 출력 가능
-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에 급여액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 지급명세서(일용지급명세서 제외)를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등) 0.25%, 1개월 이내 지연제출시 0.125%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등) 0.25%, (사업소득) 1개월 이내 지연제출시 0.125%, (근로 소득) 3개월 이내 지연제출시 0.125%
- ▶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 대리, 퀵,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 선·중개한 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과세자료 미제출, 허위제출시 과태료 부과(미제출) 건별 20만원, (허위제출, 일부미제출) 건별 10 만원

모범납세자 제도 안내 11

■ 모범납세자란?

▶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규정에 따라 선정된 납세자를 말합니다.

■ 모범납세자 추천 방법

추천 후보자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 추천(신청) 시 첨부하거나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우편	서류 작성 후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발송

■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구 분	법 인	개 인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납세 이
일 반	• 최근 사업연도의 총 부담세액 5천만원 이	력
	상	•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중소・	• 세액기준 없음	• 세액기준 없음
소상공	•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추천 제하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구 분	우 대 혜 택		
	① 세무조사 유예	② 순환조사 대상 법인 조사 시기 선택	
세정상	③ 납세담보 제공 면제	④ 인천공항「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	
우대혜택	⑤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터」이용	
	⑦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⑥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① 철도 운임 할인	②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한도 우대	
사회적	③ 공항 출입국 우대	④ 기 ¬ 또 n 요 할 건 옷 기 집 한 도 기 개 ④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1 ' ' '	⑤ 콘도 요금 할인		
우대혜택	⑦ 금융 우대	⑥ 의료비 할인 ◎ 기요 사용기도 제기	
	⑨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전용 신용카드 발급	

※ 훈격과 협약기관 별 우대혜택 기간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세금포인트 제도란?

▶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 (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NO	구 분	혜 택	신청 방법
1	납부기한 등의 연 장 신청 시 납세 담보 면제(개인· 법인 이용)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및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소관과에서 검토 후 담보 면제 【서식 받기】홈(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
2	세금포인트 온라 인 할인쇼핑몰(개 인·법인 이용)	구매 ※ 구매 금액에 따라 세금포	세금포인트몰에서 상품 구입 시, 결제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5% 할인 【세금포인트몰】 별도 주소 없이, 홈(손)택스를 통해 접속 홈(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 쇼 핑몰 안내
3	소액 체납자 재산 매각유예(개인· 법인 이용)	재산 매각유예 -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최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서"를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소관과에서검토 후 매각유예 【서식 받기】홈(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4	납세자 세법교실 우선 수강(개인이 용)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 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 세금포인트 3p 사용	홈(손)택스에서 우선 수강권을 받은 후, 국세공 무원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납세자세법교실 참가 신청시 우선 수강원 사용 【우선 수강권 받기】홈(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5	인천국제공항 비 즈니스센터(개인 이용)	⊃ 인천국제공항 방문 시 비즈 니스센터 이용 ※ 세금포인트 5p 사용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 센터 방문 전 필요한 세금포인트 5p 보유 여부 확인

6	국립중앙박물관 (개인이용)	그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종이용지로 출력하여 입장시 할인쿠폰 제시 할인 【할인쿠폰 받기】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포인트 혜택
		→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종이용지로
7	한국수목원정원	대간수목원 입장료 출력하여 입장시 할인쿠폰 제시
'	관리원(개인이용)	20%(1천 원) 할인 【할인쿠폰 받기】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 세금포인트 3p 사용 포인트 혜택

■ 세금포인트 조회 및 사용방법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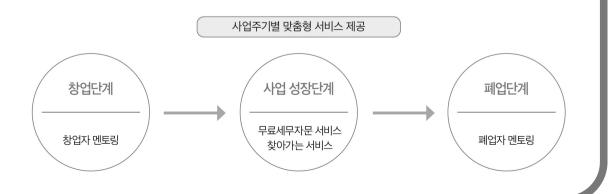
▶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13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운영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TIOI FIIAL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
지원 대상 	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
지원범위	*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
	세) 관련 사항 등은 제외
나눔세무(회계)사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나눔세무사, 나눔회계사로 구성
신청 방법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 없이 126 → 3번으로)
선생 경립	▶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



■ 창업자 멘토링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창업일부터 다음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까지 일대 일 맞춤형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세 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 전통시장, 다문화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영세납세자의 상담 상담 수요가 밀집한 곳을 방문하여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폐업자 멘토링

14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일대일 맞춤형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서면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세무서식에서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서식 출력 가능
- ※ 인터넷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제출 납세자보호민원 권리보호요청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	
세무	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보호
조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위원회 심의
	•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일반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국세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	시정요구, 시정명령
행정	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공통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 요구	조사반(담당자)
99	♥금품· 항공 및 자식 원의 표구	교체, 징계 요구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 2015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5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 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 록 조치

● 압류해제 지연처리

-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 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 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절차상 적법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세·무·정·보

구분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청
세무조사 분야	① 위법·부동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②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 대 승인 ③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 의 제기	재심의 ①②③
	④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_
	• 신고내용 확인 절차 미준수	
일반국세	국세 ● 무리한 현장확인 및 과도한 자료요구	
행정분야	•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_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 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심의요청 및 결과 통지

	세무서·지방국세청	국세청
심의요청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통지를 받 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통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16 「납세자권익24」안내

「납세자권익24」란?

납세자가 권익보호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여러 채널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접근경로: 「납세자권익24」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납세자권익24」제공 서비스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 납세자권리헌장, 국세행정서비스헌장 등 소개 ●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소개 -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권리구제/불복 신청	•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불목(과적/이의/심사)·국선대리인 신청
성실납세우대	세금포인트 · 아름다운납세자 제도 소개 모범납세자 추천(신청)
세금지원/상담 신청	● 고객의 소리(VOC), 영세납세지원단 서비스 신청, 인터넷 상담 신청, 세법해 석 신청,방문 상담 예약, 공감소통・민생지원소통추진단 소개
심의 사례/자료실	• 분기별 주요 심의 사례, 심의 사례 검색, 발간 보고서/책자, 세무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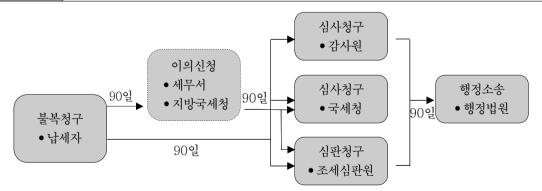
불복청구 절차

■ 사전 권리구제 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 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 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

18

사원 심사청구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불복청구 방법 :
- ▶ 인터넷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 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
- ▶ 우편, 방문 접수 : 서류 작성 후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 ▶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1. ~ 5.31.까지
- ▶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결정 고 지하므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 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 폐업 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인 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 대상 업종 :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담배 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안내

▶ 4대 사회보험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관 중 한 곳 또는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직장가입자 대상 근 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법인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사업장	상만 의무가입 대성	s·임·어업은 5명 이 상 업은 종사자 수에 상관
부과소득 상한선	104,536,481 (등급 없음)	524만원 (등급 없음) ('21.7.1.~ '22.6.30.)	상한선 없음	
보험료 부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실업급여: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 씩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 력개발:사업주 전 액 부담	사업주 전액부담
납부 방법	월납		월납(건설업 및 벌목 납)	업은 연납 또는 분기
담당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납부 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상담 전화	1577-1000 국번 없이 1355(유료)		1588-0075	

- ▶ (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 ※ 2021.7.1.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예술인·노무제공 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이중취 득 가능
- ►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자가 아닌 1인 사업주」는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 휴업급여·치료비 등 산재보험급여와 각종 보험 혜택 가능
 - ※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신청 가능
- ▶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학생연구자 에 대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
-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고교, 대학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 상 학교에서 시행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내 현장실습을 이수 중인 사람(현장실습생)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

- ※ 학원 등 학교 이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실습, 단순 견학,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등은 제외됨
-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근로자) 및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를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근로자의 경우 신규가입자*만 해당)
 -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 면 ☞ 제출 서류 작성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이트(http://insurancesupport.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상세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 공지사항 클릭 → '고용장려금'으로 검색 → "2022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 다운로드)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¹⁾ 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 자 수가 증가 ²⁾ 하는 경우 지원 1)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교대제 도입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2) (근로자 수 증가) 제도 도입 다음 달부 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 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우선지 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 구분 3개월 단위 1년 지원액 -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 1)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2)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 구분 6개월 단위 1년 지원액 - 우선지원 360만원 720만원 - 중견기업 180만원 360만원
국내복귀 기업 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총 2년 지원 원 구분 3개월 단위 1년 지원액 우선지원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

- 중소벤처기업부 -

-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방식을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해 신고기업의 불편 해소
- □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보호법)」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①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피해사실을 공무원이 조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하는 제도('18.12월 시행')

그간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고기업이 접수하기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자료의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전자우편(이메일)을 개설한다.

또한,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건 접수와 조치 결과 등의 정보 편의가 제공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 안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근거 마련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2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발생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은 24%이며, 이 중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을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의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가입 기업은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개요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특허,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보장내용 :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 및 소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
- 보장기간: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
- 보험료 및 정부지원 : 평균 300~400만원 수준(산업, 매출별 상이) / 가입보험료의 70%
- 보험사 : 평가를 통해 선정된 시중 3개 보험사
-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호대상과 보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노진상 기술보호과장은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 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험사와 지속 적으로 상품을 개선하는 등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했다.



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 중소벤처기업부 -

- □ 제조 창업기업에 대해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 5년 연장(「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
 - * 제45회 국무회의 ('22.10.11) 의결 → 10.18일 공포·시행 예정
- □ 자금부담이 많은 제조업 창업의 초기 부담을 덜어줘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 16개 부담금(상세내용 붙임참고):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특정물질수입부담금, 해양심층 수이용부담금,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대기배출 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17~'21)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제도가 제조 공장 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 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 부담금 면제 제조창업기업 실태조사 : (대상) '17~'18년에 부담금 면제를 받은 제조업 창업기업 2,790개사, (조사기간) '21.9.23 ~ '21.10.29,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 ('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붙임.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항목 및 감면대상

구분	부담금명	감면대상
1	지자체 공공분담금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 신청자
2	농지보전부담금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3	대체초지조성비	공장설립을 위해 초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4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전기사용자
5	대기배출기본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이 연간 10톤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6	수질배출기본부과금	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7	폐기물부담금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8	물이용부담금(한강)	한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9	물이용부담금(금강)	금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10	물이용부담금(낙동강)	낙동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11	물이용부담금(영산·섬진강)	영산강·섬진강 물이용 제조업 영위 창업자
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장설립을 위해 산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창업자
13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금 부과
		(인구 10만명 이상, 총 바닥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
14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자
15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16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먹는 해양 심층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 금융감독원 -

1. 검토배경

- □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되어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처리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리에 따른 사후적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향
- □ 아울러 제조업 중심의 現회계기준은 빠르게 발전하는 新산업*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 * 제약바이오 산업 등
 -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新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 장과 소통하기로 결정('22.3.11.(금))
- □ 그 일환으로 회계기준적용지원반(회계기준원 內)*을 구성·운영('22.4~6월)하였으며, 첫 번째 과제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안내
 -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
- □ 적용지원반은 제약·바이오 기업 감리시 주된 쟁점(①, ③)과 현재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②)을 주제로 선정 후 검토
- ①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 * '18.9월 감독지침(「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 지침
- ②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시 수익인식 방법

③ 판매권 등 무형자산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Ⅱ. 회계기준적용지원반 운영

- □ '22.4~6월까지 제약·바이오 분야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회계기준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
 - *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실무자가 참여

〈 회계기준적용지원반 역할 〉

(1) 역할

-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감사인간 실무 쟁점을 파악
- 실무 쟁점 및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된 논란 해소를 위한 지침 마련 후 증선위 보고
-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신속하게 공표하여 시장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 ※ 제약·바이오 분야는 적용지원반 활동의 시작이며, 향후 적용지원반을 계속 운영할 계획
- 적용지원반에서는 선정된 3가지 주제에 대해 실무이슈 파악 및 해결방안을 검토

〈 적용지원반에서 다룬 3가지 주제 〉

- ①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 (1) 임상 승인 신청 前 지출의 경우
- (2) 개발 완료된 의약품의 다른 시장 판매허가를 위한 지출의 경우
- (3)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의 구분 및 개발활동에 재고자산을 사용한 경우
- ②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시 수익인식 방법
- ③ 판매권 등 무형자산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 적용지원반 검토안에 대해, 대형 회계법인 內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자문(PA)팀, 제약·바이오 협회를 대상으로 의견조회 실시

Ⅲ. 외부전문가 의견조회

□ (의견조회 목적) 적용지원반이 마련한 제약·바이오 회계처리 감독지침안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등을 파악

〈 외부전문가 및 산업 종사자 의견조회 현황 〉

- ∘ 대상 및 기간('22.8.17.~'22.8.24.)
 - 4개 대형 회계법인 內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자문(PA)서비스팀
 - 한국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소속 제약·바이오 기업
- 。 응답
 - 대형 회계법인 : 삼일, 안진, 한영, 삼정회계법인
 - 제약·바이오 기업 4개사 : a사, b사, c사, d사
- □ (의견조회 결과) 감독지침 중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및 기술이전 계약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
 - * (①-1)~(①-3) 개발비 자산화
 - ** (②)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시 수익인식 방법
- ① 회계법인이 제기한 회계기준 관련 기술적 이슈는 회계기준원의 추가 검토를 거친 후 대부분 반영
- ② 향후에도 개별 업종 특유의 회계처리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 회계제도심의위원회('22.9.2.(금))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22.9.21.(수)) 보고

Ⅳ. 회계처리 감독지침

〈 감독지침의 성격 〉

- ◇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회계감리 관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님
- ◇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가능
- ◇ 감독지침에 따라 향후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할 예정

1.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가. 임상 승인 신청 前 지출

- □ (쟁점)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의 개발 관련 先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
 - * 기존 감독지침('18.9월)을 통해, 원칙적으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를 허용하였으나, 1상 개시 승인 前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음

〈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가능 단계(제약·바이오 감독지침('18.9.19)) 〉

유 형	자산화 가능	설정근거
신 약	임상 3상 개시 승인	■장기간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약효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임상 3상 개시 승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최근 10년간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정부 최종 승인율이 약 50%(美 제약·바이오 업계 통계)
바이오 시밀러	임상 1상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유사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임상 1상 개시 승 인 이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美 연구결과,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최종 승인율 약 60%

□ (안내사항) 회사가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에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의 지출(예: 임상물질의 구매·생산 원가 등)도 자산화 가능

〈 [참고]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 ① 회사가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한 임상 개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의 임상 개시 승인 경험을 제시하는 경우
- ② 이미 다른 국가에서 임상 1상 개시 승인이 되었고, 동 국가에서의 심사기준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③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지만, 그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3의 외부 전문가 의견이나 공신력 있는 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기존 감독지침에서 임상 1상 개시 승인을 개발비 자산화 가능 단계로 본 것은, 적어도 식약 당국의 임상 1상 개시 승인은 있어야 개발활동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 ※ 기존 감독지침(금융위, '18.9.19)에 따라 임상 3상 개시 등★을 기준으로 자산화 하는 경우에도, 동 지침을 임상 3상 개시 등 승인 신청 前 지출에 대한 자산화 여부 판단에 적용 가능
 - * (1) 신약: 임상 3상 개시 승인. (2) 제네릭: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3) 진단시약: 제품 검증

나. 개발 완료된 의약품의 다른 시장 판매허가를 위한 지출

- □ (쟁점) 개발이 완료되어 이미 특정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 판매 승인을 위한 필수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의 자산화 가능 여부
- □ (안내사항) 특정 국가에서 판매중이더라도, 해당 지출이 또 다른 국가의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활동에 투입된 것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
 - * 1038.BC86 : ① 최초에 평가된 성과기준을 초과하여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②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 후속지출을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

- 이때, 판매 운송과 관련된 원가(물류비 등)도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판매 승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운송밸리데이션이 기존 제품에 연속되는 추가 개발* 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발*이나 연구**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
 - * 개발활동: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의미(→개 발비(자산) 인식 가능)
 - ** 연구활동: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비용 처리)
- 한편, 다른 국가에서의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활동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등 무형자산의 인 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발생 시 비용 처리
 - *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용·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기술적·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

다.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의 구분 및 개발활동에 재고자산을 사용한 경우

- □ (쟁점) 기업이 의약품 등의 필수 개발 과정에 자사 보유 재고자산을 투입·사용한 경우, 동 재고자산의 개발비 자산화 가능 여부
- □ (안내사항) 개발과제로 선정된 최종안을 시험하는 활동에서 재고자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료원가(재고자산 등)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관련 원가로서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개발비(무형자산)로 대체
 - *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판매가격 추가 예상 완성원가 판매비용
 - 재고자산이 판매불가능하여 감액하였고 여전히 판매 불가능 상태라면, 재고자산을 감액했던 원인이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환입한 금액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없음
 - 한편, 선정된 최종안을 시험하는 운송밸리데이션*과 같은 활동이 의약품 판매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인 운송 검증과정이라면 개발활동에 포함될 수 있음
 - * 운송밸리데이션: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밸리데이션 과정의 일환으로, 운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이 계획한 대로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검증하기 위한 필수절차
 - 다만 개발활동이 완료된 후, 단순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이용하던 운송수단을 변경· 대체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운송밸리데이션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자산 인식 불가)

※ 기업은 의약품 판매승인을 위한 필수절차로 다양한 유형의 밸리데이션(validation)을 수행하며, 그 중 하나가 운송밸리데이션임 → 동 지침을 기타 유사한 밸리데이션에도 적용 가능

2.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시 수익인식 방법

- □ (쟁점)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이 결합되어 있는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의 경우, 라이선스 매각에 대한 수익을 그 밖의 부대조건과 구분하여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 함께 제공하는 임상시험 용역 등
- □ (안내사항) 다음의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한다면 그 밖의 부대조건과 별개로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 가능*
 - * 회사(licensor)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licensee)에게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사용권)를 이전한 경우

〈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을 구분할 수 있는 요건(●과 ② 모두 충족) 〉

- 임상용역을 회사(licensor) 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어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licensee)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경우*
 - * (예) B사(licensee)는 반드시 A사(licensor)가 아니더라도 제3의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상용역이 목표 시장 內 판매 허가 획득을 위한 의약품의 효과·안전성 등의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 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 * (예) 다른 국가에서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인 경우
- 이때, 그 밖의 부대조건(라이선스 매각분 外)은 라이선스의 수익인식과 별개로 판단하여, 향후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으로 인식
- 한편, 위의 **①** 또는 **②**를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매각분만 별개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
 - 이 경우는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을 하나로 보아 고객에게 단일의 수행의무가 언제 이행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 인식

〈 [참고]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 ① 회사(licensor)가 임상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의약품이 유의적으로 변형될 것으로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고객, licensee)이 기대하는 경우
- ② 통상 前임상단계와 같은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최종 임상용 의약품을 변형시키는 경우
 - * 의약품의 구조·제형 등이 확정되기 전으로서, 비임상시험 단계(예: 독성시험)를 의미
- 단, 임상의 진행단계 또는 의약품의 성격 등 상황에 따라서 용역 등이 최종 임상용 의약품을 변형시키는 정도는 다를 수 있음
- ③ 임상시험이 실패하면, 회사(licensor)가 라이선스 제공 대상(후보물질)을 유의적으로 변형해야 하고 양자간 그 러한 기대가 있는 경우
 - ※ 대가의 환불 가능성은 계약대가의 추정(변동대가) 시 고려할 뿐, 수행의무 판단과는 무관

3. 판매권 등 무형자산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 □ (쟁점) 무형자산(예: 특허권, 라이선스)을 타기업에 양도하면서 발생된 손익(순매각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의 회계처리 방법
- □ (안내사항) 주된 영업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이라면 영업손익임
 - 특정 거래가 1회성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참고] 무형자산 매각 관련 주된 영업활동 판단시 고려가능한 지표의 예시 〉

- 정관에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으로 구체적 적시가 되어 있는 경우
- ② 무형자산 매각이 외부에 알려진(예 : 영업보고서, IR자료 등)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과 일관되는 경 우
- ❸ 무형자산 매각과 관련된 조직·인력, 향후 사업 계획 등이 주된 영업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우
- □ 무형자산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매각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며, 주된 영업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각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 예를 들어,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을 통한 투자손익도 지주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판단된다면 해당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 가능

〈 [참고] 영업손익 분류의 예시 〉

- [1] 유가증권처분손익은 제조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나,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손 익으로 분류
- ② 지분법손익도 제조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경우 영업손익으로 분류

V.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기대효과) 제약·바이오와 같은 新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 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향후계획)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간사:회계 기준원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

참고 1. 회계이슈별 상세 사례

- 1.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 가. 임상 승인 신청 前 지출
- < 사실 관계 >
- □ A사는 B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 1상을 준비 중이며, 기존 감독지침*을 적용하여 임상 1상 개시 승인시점에 B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자산화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금융위, '18.9.19)
 - A사는 기존 감독지침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에 생산한 물질(승인대상 물질)을 임상 1상 개시 이후에 투입하는 경우.
 - 이를 개발비로 자산화가 가능한지 여전히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식약당국 규정상 1상 개시 승인을 위해서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신청 前에 대상물질(임상 물질)을 만들어야 함

< 이슈 사항 >

□ 당국 규정상, 임상 1상 개시 승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상 1상 승인 신청 前에 승인대상물질 (임상물질)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이 물질을 임상 1상 개발활동에 투입했다면 개발비로 자산화가 가능한지?

〈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가능 단계(제약·바이오 감독지침(18.9.19.) p4) 〉

유 형	자산화 가능	설정근거
신 약	임상 3상 개시 스이	■ 장기간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약효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임상 3상 개시 승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어려울 것으로 판단 ■최근 10년간 임상 3상 개시 승인 이후 정부 최종 승인율이 약 50%(美 제약바이오 업계 통계)
바이오 시밀러	임상 1상 개시 수이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유사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임상 1상 개시 승인 이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美 연구결과,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최종 승인율 약 60%

< 회계 처리 >

□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 지출이라도 전체 개발 프로젝트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면, 임상 1상 개시 승인 前의 지출(예: 임상물질의 구매·생산 원가 등)도 자산화 가능

〈 [참고]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객관적 근거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 ① 회사가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한 임상 개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의 임상 개시 승 인 경험을 제시하는 경우
- ② 이미 다른 국가에서 임상 1상 개시 승인이 되었고, 동 국가에서의 심사기준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 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③ 임상 1상 개시 승인 전이지만, 그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3의 외부 전문가 의견이나 공신력 있는 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 기존 감독지침에서 임상 1상 개시 승인을 개발비 자산화 가능 단계로 본 것은, 적어도 식약 당국의 임상 1상 개시 승인은 있어야 개발활동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 * 내부 개발단계에서 사용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 기준서에 따른 인식 요건 및 문단 52~67까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 기존 감독지침(금융위, '18.9.19)에 따라 임상 3상 개시 등★을 기준으로 자산화 하는 경우에도, 동 지침을 임상 3상 개시 등 승인 신청 前 지출에 대한 자산화 여부 판단에 적용 가능
 - * (1) 신약:임상 3상 개시 승인, (2) 제네릭: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3) 진단시약:제품 검증

- 나. 개발 완료된 의약품의 다른 시장 판매허가를 위한 지출
- < 사실 관계 >
- □ E사는 A의약품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목표 시장(한국, 유럽, 미국)에 판매하기 위한 생산을 진행 중
- A의약품의 목표 시장은 한국, 유럽, 미국으로서, E사는 A의약품에 대한 한국 식약당국의 판매허가를 득하여 국내 판매 중

〈목표 시장의 식약당국 승인 현황〉

지역	내용	개발비 회계처리
한국	'20.7월 (A의약품 국내 판매 중)	개발비 상각 中
유럽	-	개발비 인식 中

- E사는 유럽 의약품청(EMA)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유럽 의약품청 (EMA)의 필수 허가 요건 중 하나인 운송밸리데이션*에 A의약품을 투입하였음
 - * 운송밸리데이션 : 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밸리데이션 과정의 일환으로, 운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품질이 계획한 대로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검증하는 필수절차

< 이슈 사항 >

□ A의약품이 한국에서 판매중인 경우(관련 개발비는 이미 상각 개시), 동일 A의약품의 유럽 판매 승인을 위해 투입된 운송밸리데이션 원가를 개발비로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계 처리 >

- □ 타지역에서의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운송밸리데이션이 유럽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 가능*
 - * 1038.BC86 : ① 최초에 평가된 성과기준을 초과하여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②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경우 후속지출을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
- 또한 판매 운송과 관련된 원가(물류비 등)도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직접 관련 된 경우,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음(1038.67)
- □ 다만, 판매 승인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운송밸리데이션이 기존 제품에 연속되는 추가 개발*인 지, 아니면 새로운 개발*이나 연구**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
 - * 개발활동: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제품·공정·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개발비(자산) 인식 가능)
 - ** 연구활동: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비용 처리)
 - ㅇ 만약 운송밸리데이션이 유럽 판매 승인을 위한 개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등 무형자산 인식

기준* 미충족한다면 발생 시 비용 처리

- *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용·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기술적·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
- 다.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의 구분 및 개발활동에 재고자산을 사용한 경우

< 사실 관계 >

- □ A사(제조사)는 자사의 바이오 의약품 1200Q 개발 과정 중 필수절차인 운송밸리데이션에 자사 보유 재고자산*을 투입·사용하고 동 원가를 개발비로 자산화 하였음
 - * 당초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했으나 판매 허가를 얻지 못해 판매가 사실상 어려워진, 자사의 바이오 의약품 1100Q를 개발활동에 투입

< 이슈 사항 >

□ 제품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운송밸리데이션에 재고자산을 투입·사용(운송 테스트에 사용)한 경우 개발비(무형자산)로 자산화하는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 회계 처리 >

- □ A사가 자사 재고자산을 투입한 운송밸리데이션이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른 개발활동인지, 연구활동 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
- □ 상업적 생산목적으로 시험공장을 가동하는 활동이나,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시험하는 활동 은 개발활동에 해당
 - 운송밸리데이션이 판매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인 운송 검증과정이라면 개발활동에 포함될 수 있으며(1038.59)
 -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료원가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하는데 필요 한 직접 원가로서 개발비 포함될 수 있음(1038.66)
 - 다만 개발활동이 완료된 후, 단순 물류비 절감 목적으로 이용하던 운송수단을 변경·대체 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운송밸리데이션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
- □ 한편,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개발활동 관련 재료원가 투입이라면 개발비로 자산화가 가능하지만,
 -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개발비(무형자산)로 대체
 - *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판매가격 추가 예상 완성원가 판매비용
 -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1038.24)하며, 이는 무형자산의 취득시점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임

- 판매가 사실상 어려워져 감액했고 여전히 판매 불가능하다면, 개발비 투입이 재고자산을 감액했던 원인의 해소는 아니므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환입한 금액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없음

2.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시 수익인식 방법

가. 복수의 수행의무인 경우

< 사실 관계 >

〈 라이선스 매각 및 임상 3상 용역 수행 〉

■ 일반사항

- ㅇ A사는 개발한 C치료제의 해외 'X국' 진출을 위해 B사와 기술이전(License Out) 계약*을 체결
 - * A사는 B사에 C치료제의 X국 內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
 - C치료제는 이미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시판 승인을 획득하여 화합물(compound)의 구조 및 용법 등이 확립된 상태
 - X국에서의 시판을 위해서는 X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임상 필요
 - B사는 X국 內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필요한 A사의 각종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서 에 A사가 개발한 C치료제 관련 특허들이 명시
 - B사는 법적 보호를 받는 A사의 특허권을 포함하여 A사가 타 지역에서 수행하여 보유하는 임상 자료 및 그 밖의 노하우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권리 획득

■ 임상시험 용역 제공

- ㅇ A사가 B사의 X국 內 판매 허가(Marketing Authorization) 획득을 위한 임상 3상* 수행
 - * 라이선스 매각 이후, 임상 대상물질의 변형이나 투약용법·제형 등이 변경될 것으로 B사가 기대하지 않음
 - 이 임상용역은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A사 이외의 제3자도 제공할 수 있으며, B사는 임상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제3자를 쉽게 구할 수 있음
 - A사는 임상용역 대부분의 업무를 제3자인 CRO* 업체에 위탁
 -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s (임상시험 대행기관)

< 이슈 사항 >

□ C치료제	세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	(임상(3상)시학	점 용역	등)」	- (ه	구별되는	수
행의무역	인가?									

< 회계 처리 >

□ C치료제 「라이선스」 매각과 「임상용역」은 각각의 구별되는 수행의무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① 임상시험 용역을 A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수행 가능하여, B사는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음* (→ 효익 측면)
 - * (예) B사(고객, licensee)는 반드시 A사(licensor)가 아니더라도, 제3의 임상시험 대행기관을 쉽 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② 다른 국가에서 시판 중인 C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은 X국 內 판매 허가 획득을 위한 C치료제의 효과성·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뿐 치료제의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는 않음(→ 위험 측면)
 - 임상시험 용역의 결과가 임상 대상 치료제의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임 상 대상 치료제와 임상용역이 상호의존성이나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없음
- □ 구별되는 수행의무 별로 다음과 같이 수익 인식
 - (①라이선스 매각분)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언제 이전되는지를 판단하여 수익 인식
 - A사(licensor)가 라이선스 대상 의약품(지적재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 매각 시점에 지적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이전했다고 판단 가능 (1115.B61)
 - * 그 밖의 부대조건에 대한 수행의무에 해당하는 활동 제외
 - ⇒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수익인식"
 - 이때,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한 임상용역은 라이선스의 사용권 또는 접근권 판단시 고려하지 않음(1115.B58(3))
 - (②그 밖의 부대조건) 라이선스의 수익인식과는 별개로 판단하며,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 인식(1115.32)

나. 단일의 수행의무인 경우

< 사실 관계 >

〈라이선스 매각 및 前임상시험, 임상용 의약품의 개발 용역 수행〉

- 일반사항
- ㅇ A사는 개발한 D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이전(license out) 계약을 B사와 체결
 - 계약 당시는 후보물질에 대한 前임상 단계(동물시험단계)로 최종 임상용 의약품이 개발되기 전임
 - 일본 外 국가에서 연구, 개발, 제조,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B사에 부여
- 그 밖의 용역 제공
- ㅇ A사는 후보물질에 대한 前임상시험. 임상용 의약품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
 - A사는 후보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문서화하여 B사에게 제공
 - 前임상시험 시 결정된 독성 용량을 바탕으로 제형·용량·강도 등을 결정하는 전체 과정을 수행해야 최종 임상용 의약품 개발이 완료됨

- 임상용의약품 연구개발단계에서 후보물질(화학식)을 변경시키지는 않지만 같은 화학식이더라도 구 조, 제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ㅇ 기타 용역은 반드시 A사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으로 제3자도 제공 가능

< 이슈 사항 >

□ D치료제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용 의약품 개발 용역 등)」이 구별되는 수행의무인가?

< 회계 처리 >

- □ D치료제 「라이선스」 매각과 「임상용 의약품 개발 용역 등」은 단일의 수행의무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
- ① A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대상 의약품이 계속 유의적으로 변형될 것으로 B사(고객, licensee)가 기대한다면 라이선스와 그 밖의 용역은 계약상 구별되는 것이 아님
- ② 사례는 前임상단계와 같은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최종 임상용 의약 품을 변형시키는 경우에 해당
 - * 의약품의 구조·제형·투여량 등이 확정되기 전으로서, 독성시험과 같은 비임상시험 단계를 의미
 - 단, 임상의 진행단계 또는 의약품의 성격 등 상황에 따라서 임상용역 등이 최종 임상용 의약품을 변형시키는 정도는 다를 수 있음
- □ 단일의 수행의무인 경우 고객에게 수행의무가 언제 이행되는지를 판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 인식(1115.32)

3. 판매권 등 무형자산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 사실 관계 >

□ A사는 무형자산(예: 특허권, 라이선스 등)을 B사에 양도하면서 장부금액과 순매각금액의 차이(이하 '무형자산 매각손익')를 영업손익으로 처리

< 이슈 사항 >

□ A사가 '무형자산 매각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 회계 처리 >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

- 한 손익이라면 영업손익으로 분류
- 특정 거래가 1회성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참고] 무형자산 매각 관련 주된 영업활동 판단시 고려가능한 지표의 예시 〉

- ❶ 정관에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으로 구체적 적시가 되어 있는 경우
- ② 무형자산 매각이 외부에 알려진(예 : 영업보고서, IR자료 등)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과 일관되는 경으
- ③ 무형자산 매각과 관련된 조직·인력, 향후 사업 계획 등이 주된 영업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우
- □ 무형자산 매각이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매각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며, 주된 영업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각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 예를 들어,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을 통한 투자손익도 지주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판단된다면 해당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 가능

〈 [참고] 영업손익 분류의 예시 〉

- ① 유가증권처분손익은 제조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나,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손 익으로 분류
- ② 지분법손익도 제조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경우 영업손익으로 분류

참고 2. (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회계처리기준 주요 내용

1.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1.1 일반원칙

- □ 개발비 자산의 내부 창출과정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라 개발활동과 연구활동 으로 구분*
 - * 개발활동: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연구활동: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 구활동
- 무형자산의 정의*와 제1038호 문단 5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원 가는 개발비로 자산화
 -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 ** 기업이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용·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기술적·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을 모두 제시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
-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는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 비용 처리(1038.59)

1.2 회계기준 세부 내용

- □ (개발활동 vs 연구활동) 판매승인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예: 운송밸리데이션)이 K-IFRS 제 1038호 '무형자산' 기준서에 따른 개발활동인지, 연구활동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
 - 운송밸리데이션이 K-IFRS 제1038호 문단 5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개발활동에 해당한 다면 개발비로 자산화 가능
 - 상업적 생산목적으로 시험공장을 가동하는 활동이나,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시험하는 활동도 개발활동에 포함(1038.59)되므로
 - 운송밸리데이션이 판매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인 운송 검증과정이라면 개발활동에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운송밸리데이션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활동(부수적인 영업활동)이라면 개발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1038.31)
- □ (개발비 원가) K-IFRS 제1038호 문단 57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1038.66)를 포함
 -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료원가도 이러한 직접 관련 원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38.66),
 - 판매비 등도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 원가에 포함될 수 있음 (1038 67)
 - 따라서 개발활동으로서 판매 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인 운송밸리데이션에 투입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개발비로 대체 가능
 - * 다만,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기준서에 따라 먼저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 한편, 제품이 개발된 후 판매 승인을 목적으로 수행한 운송밸리데이션(후속지출)도 무형자 산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기존 개발비 장부금액에 가산*할 수 있음(1038.BC86)
 - * 기존 자산에서 미래경제적효익을 추가로 창출(→기존 개발비 장부금액에 가산), 기존 자산과는 다른 별도의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별도의 개발비 자산 인식)
 - 그러나, 운송밸리데이션이 개발활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

는다면 발생 시 비용 처리(1038.BC85)

- □ (재고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대체)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기준서에 따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개발비(무형자산)로 대체
 - *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판매가격 추가 예상 완성원가 판매비용
-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1038.24)하며, 이는 무형자산의 취득시점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함
- 한편,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식했다면,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확입(1002.33)

2.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시 수익인식 방법

2.1 일반원칙

- □ 「지적재산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에 더하여,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함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기술이전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內 여러 의무가 구별되는지 먼저 파악한후 수익 인식
 - * 지적재산 라이선스 : 라이선스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정하며,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는 특허권, 상표권, 기술 등을 포함
 - ** 예 : 제품공급, 연구용역, 제조용역 등을 제공
 - (경우1) 라이선스 부여가 그 외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계약 내에서 구별되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과 그 밖의 약속(재화·용역 공급)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 □ 고객에게 수행의무가 언제 이행되는지를 판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 인식
 - (경우2) 라이선스 부여가 그 외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계약 내에서 구별되는 경우 → ①라 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과 ②그 밖의 (재화·용역 공급) 약속은 각각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 계처리
 - □ (①라이선스 부여)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한 시점에 이전*되는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이전 되는지**를 판단하여 수익 인식
 - * (한 시점에 이전) M사와 A영화사는 '히어로물C'에 대한 판권 라이선스 2년 계약 체결. A사는 '히어로물C' 영화를 상영. M사는 '히어로물C'의 판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할 필요 가 없고, A사도 이를 기대하지 않음(→ 라이선스 사용권)
 - ** (기간에 걸쳐 이전) M사와 B의류사는 라이선스 2년 계약 체결, B사는 계약기간 동안 M사 히 어로를 B사 의류에 사용하며, M사가 새로 만드는 캐릭터로 의류를 만들어 함. B사는 계약에 따라 M사가 꾸준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것으로 기대(→ 라이선스 접근권)

□ (②그 밖의 약속) 라이선스의 수익인식과는 별개로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하여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 인식

2.2 회계기준 세부 내용

- □ 기술이전 계약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mathbf{0}$ (α 또는 β)과 $\mathbf{2}$)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수행의무를 별도로 구별할 수 있음
- (효익 측면) 고객이 재화·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α)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이용하여 그 재화·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β)*
 - * 재화·용역의 경제적 효익을 그 개별 단위 수준에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임
- ② (위험 측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구별 가능한 경우*
 - * 약속간 위험을 분리하여 다른 약속과 위험 측면에서 별도로 구별 가능한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할 수 있음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이에 한정하지 않음), 「라이선스」와 「그 밖의 약속」을 계약상 구별할 수 없음
- ① 회사가 그 밖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임상 대상 의약품이 계속 유의적으로 변형될 것으로 고객(Licensee)이 기대한다면 「라이선스」와 「그 밖의 약속」은 계약상 구별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前임상 단계와 같은 초기 단계에 수행되는 임상용역은 의약품의 구조·제형 등이 확정되기 전이고 대상 의약품을 변형*시키므로, 라이선스와 그 밖의 용역은 계약상 구별되지 않음
 - * 비임상시험(예: 독성시험 등)은 의약품의 성분·제형 등에 영향을 미쳐 최종 임상용 의약품을 변형시킴
- ② 라이선스 부여시점에 후보물질이 정해져 있으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지적재산을 변형, 완성하는 과정이라면 라이선스와 연구개발 활동은 변형적 관계에 있음
 - *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물질의 구조·제형·투여량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
- ③ 임상시험이 실패하면, 회사(licensor)가 라이선스 제공 대상(후보물질)을 유의적으로 변형해야 하고 양자간 그러한 기대가 있다면 라이선스와 임상시험은 하나의 수행의무임
 - 또한 후속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후보물질을 유의적으로 가공·변형시킨다면 라이선스와 임상시험 제공의무는 하나의 수행의무임
- ④ 라이선스와 함께 제공되는 그 밖의 약속이 임상용역이 아닌 제조용역(특정 기간 제품공급) 인 경우, 제조용역의 특수성*으로 회사만 제조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면, 라이선스 부여와

제조용역은 구별되지 않음

- * 다만, 용역 자체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회사로부터만 제조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상 제약 은 고려하지 않음
- 즉, 제조기술의 어려움과 법률적인 제한* 등을 고려할 때 타사가 제조용역을 제공할 수 없고, 회사도 제조용역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라이선스와 제조용역이 구별될 수 없음
 - * 예 : 법률적으로 관련 지적재산을 보유한 자만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음
- ※ 대가의 환불 가능성은 계약대가를 추정(변동대가)하는 데 고려할 뿐, 수행의무 식별 판단 자체에는 영향이 없음

3. 판매권 등 무형자산 매각손익의 손익계산서 표시

3.1 일반원칙

- □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의미
 -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 에서 구분하여 표시
 - 여기서 수익이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으로서 제조업 등의 경우 통상 매출액*임
 - *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화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
 - 영업이 특수하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 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
 -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서 금융회사인 경우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배당금수익 등이 포함
 -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서 금융회사인 경우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판매비와관리비 등이 포함
 - □ 특정 거래손익이 영업손익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손익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지에 달려있음

3.2 회계기준 세부 내용

※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 참조

- □ 특정 수익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였는지 판단할 때 회사의 영업특성 등 제반상 황을 고려
 - 예를 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등의 다 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복수로 식별 *될 수 있음
 - * 예: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업 도 영위하는 경우(→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주된 영업활동이 될 수 있음)

참고 3.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 7 <u>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u> <u>순매각금액을 말한다.</u>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정상거래의 가격을 반영한다. 전자는 기업특유가치이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33 <u>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한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 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u> 그 결과 새로운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이 된다. 판매가격의 하락 때문에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재고항목을 후속기간에 계속 보유하던 중 판매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8 원가: <u>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u> <u>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u> 경우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 보상'과 같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으로 귀속시킨 금액

개발: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 20 무형자산의 특성상 자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자산의 부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 출은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기 보다는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을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속지출(예: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완성 후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단 63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출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2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24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 31 무형자산의 개발과 관련한 영업활동 중에는 해당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활동도 있다. 이러한 부수적 인 영업활동은 개발활동 전이나 개발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각각의 해당손익계정에 분류한다.
- 5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연구'와 '개발'은 정의되어 있지만,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의 목적상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 53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

- 5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55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 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다.
- 56 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2)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 (3)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 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 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58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부프로 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 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 59 개발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3)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 (4)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 60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 '자산손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사용하여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경제적효익을 평가한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른 현금창출단위의 개념을 적용한다.
- 61 무형자산을 완성하고 사용하며 그로부터 효익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능성은, 예를 들어, 필요한 기술적 자원 및 재무적 자원 등과 그러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설명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기업은 그 사업계획에 대한 대출자의 자금제공 의사표시를 통해 외부자금조달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 62 원가계산시스템으로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나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급여 등의 지출을 원가계산시스템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63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 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64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 65 문단 24에 따라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문단 21, 22와 57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문단 71에 따라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 66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 (2)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의 정의 참조)
- (3)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 (4)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자를 인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67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경비 지출. 다만, <u>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u>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
- (3)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 71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 BC85 이 기준서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거나 개별 취득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연구 관련 지출이라면 발생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2) 문단 57의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발 관련 지출이라면 발생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3) <u>문단 57의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시키는 개발 관련 지출이라면 취득된 IPR&D 프로젝</u>트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BC86 이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IASB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여 영업권과 분리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IPR&D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지출의 처리가 개정 전 IAS 38에서는 모호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부는 연구, 개발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나 개발단계에서의 지출과 관련된 개정 전 IAS 38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그러한 규정은 외견상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및 측정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대신, 후속지출을 다루는 개정 전 IAS 38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에 의하면 취득이나 완성 후의 무형자산에 대한 후속지출은 다음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비용으로 인식될 것이다.

(1) 그 지출은 최초에 평가된 성과기준을 초과하여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2) <u>그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자산에 귀속될 수 있다.</u>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후속지출은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 27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 (1)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 (2)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 28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소비할 수 있거나, 폐물 가치(scrap value)보다 큰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거나, 그 밖에 달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고객은 문단 27(1)에 따라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재화나 용역은 그 자체에서 고객이 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재화나 용역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란 (그 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별도로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이거나, 고객이 그기업에서 이미 획득한 자원(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미래에 이전하게 되어있는 재화나 용역 포함)이거나 다른 거래나 사건에서 이미 획득한 자원을 말한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는 다양한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보통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한다는 사실은 그러함을 나타낼 것이다.
- 29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문단 27(2)에 따라 별도로 식별되는지를 파악할 때, 그 목적은 계약상 그 약속의 성격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들)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음을 나타내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기업은 해당 재화나 용역과 그 계약에서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이 통합으로 고객이 계약한 결합산출물(들)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이 됨) 유의적인 용역을 제 공한다. 다시 말해서, 기업은 고객이 특정한 결합산출물(들)을 생산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투입물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있다. 결합산출물(들)은 둘 이상의 단계, 구성요

소, 단위를 포함할 수 있다.

- (2) 하나 이상의 해당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하거나, 계약에서 약속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변형 또는 고객 맞춤화 된다.
- (3) 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서 각 재화나 용역은 그 계약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재화나 용역에 의해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각 재화나 용역을 별개로 이전하여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재화나 용역은 서로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 30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화나 용역을 약속한 다른 재화나 용역과 결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 모두를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수행의무의 이행

-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정된다.
- 32 문단 22~30에 따라 식별한 각 수행의무를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또는 (문단 38에 따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를 계약 개시시점에 판단한다.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기업 약속의 성격을 판단함

- B58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 산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 (1)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문단 B59와 B59A 참조).
- (2)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문단 B58(1)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 (3)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문단 25 참조).



2021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금융감독원 -

<주요 내용>

1.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 209개 회계법인의 매출액은 5.1조원으로 전기보다 16.8%(0.7조원) 증가하였고, 회계법인 유형별로는 등록법인이 3.9조원(전기대비 +17.3%), 4대법인은 2.5조원(+17.2%)의 매출을 시현하였음
 - 업무유형별로는 경영자문이 1.8조원(전기대비 +28.8%), 회계감사 1.7조원(+11.7%), 세 무자문 1.4조원(+10.1%), 기타 0.2조원(+10.6%)순임
- □ 외부감사 실적은 총 28,852건이며, 평균 감사보수는 48백만원으로 전기보다 3.1% 증가하였으며 등록법인 기준으로는 평균 69백만원, 전기대비 +5.2%), 4대법인은 172백만원 (+6.0%)으로 나타났음

2. 시사점 및 향후 감독방향

- □ 회계법인이 대형화되고 외감대상 회사수가 증가하고 있어 인적자원 및 감사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경영자문 등 비감사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 금감원은 등록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등록요건 점검 등 회계 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 특히 중소형회계법인의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사리스크 관리 및 수습회계사 관리체계 내실 화 등을 유도할 계획임

1.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주요내용

- □ (회계법인 수) 전체 209개로 전기말보다 14개 증가, 소속 회계사 100명 이상(대형)은 20개, 40~99명(중형)은 24개, 40명 미만(소형)은 165개
- □ (매출액) 총 5.1조원으로 전기보다 0.7조원(16.8%) 증가, 이 중 등록법인은 3.9조원(비중 76.5%), 4대법인은 2.5조원(49.7%)
 - 부문별 매출액은 경영자문 1.8조원(비중 36.3%), 회계감사 1.7조원(32.5%), 세무자문 1.4조원(27.3%), 기타 0.2조원(3.9%)
- □ (감사실적*) 총 28,852건으로 전기보다 1,883건 증가, 이 중 등록법인은 17,383건(60.2%), 4대법인은 4,081건(14.1%)
 - * 개별재무제표 감사실적(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회사의 별도재무제표 포함)
- □ (소송현황)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15건*으로 전기보다 9건 감소, 소송금액은 5.894억원으로 전기보다 3.698억원 감소
 - * 대상 회계법인 19개

Ⅱ. 시사점

- [] 감사인 등록제 시행 등으로 회계법인의 대형화 추세가 지속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 등으로 회계법인간 합병분할, 인력 증원으로 회계법인의 규모 가 대형화*되고 있어
 - * 등록회계사 100명 이상 회계법인:17개(FY19) → 19개(FY20) → 20개(FY21)
 - 소속 회계사에 대한 교육 강화, 감사업무 배정시 인적자원의 적격성 심사 등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 ② 외부감사대상 회사수 증가에 따른 감사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新외감법 도입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증가*하였으나, 등록법인의
 ** 전체회계법인 경영자문 매출비중: 36.3%, 회계감사 매출비중: 32.5%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수임시 위험평가 및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 독립 성 훼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4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 필요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기초자료 및 감사인의 감사품질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됨
 - 따라서 사업보고서의 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를 보다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 공시할 필요
 - ※ 회계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허위기재, 기재사항 누락 또는 부실기재시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조치

2021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I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 시하고 있으며 3월말 결산법인은 '22.3월말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법인(19개)은 '22.9월말까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1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

1. 회계법인 일반현황

- 가. 회계법인 수 : 총 209개 (+14개)
- □ '22.3월말 현재 회계법인(금융위원회 등록)은 209개로 전기보다 14개 증가*

 - 규모별로는 소속 회계사가 100명 이상(대형법인)은 20개, 40~99명(중형)은 24개, 40명 미만(소형)은 165개*
 - * 신설 15개사는 모두 소형법인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법인*(이하 '등록법인')은 전기와 동일한 40개이며, 대형(19개)과 중형(21개)에 분포
 - * 상장회사 감사를 위해 감사품질 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공인회계사 수 최소 40명(지방 20명) 이상 등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한 회계법인
 - 전기 중형이었던 1개사(신우)가 회계사수 증가로 대형으로 재분류
 -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이하 '일반법인')은 169개로 대부분 소형 임(대형 1개, 중형 3개, 소형 165개)

소속 등록회계사 규모별 현황

(단위:개)

	7 H	FY	'19	FY	′20	FY	21	전기대비 변동
-	구 분 	(A)		۹)	(B)		(B-A)	
<u>소속</u>	100명 이상	17	(16)	19	(18)	20	(19)	1
등록	40 ~ 99명	28	(24)	25	(22)	24	(21)	△1
회계사	40명 미만	140	(-)	151	(-)	165	(-)	14
	185	(40)	195	(40)	209	(40)	14	

^{* ()}는 등록법인

나. 등록회계사 : 총 23,938명 (회계법인 소속 13,737명, 비중 57.4%)

- □ (등록회계사 분포) 등록회계사는 전체 23,938명으로 전기보다 1,077명(+4.7%) 증가
 - 이중 회계법인 소속된 회계사는 전체의 57.4%인 13,737명으로 전기보다 733명(+5.6%) 증가
 - 등록법인 소속은 10.824명으로 전기보다 489명(+4.7%) 증가
 - 4대법인 소속은 6,300명으로 전기보다 165명(+2.7%) 증가하여 전체 대비 비중은 45.9%로 전기보다 1.3%p 하락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명, %, %p)

	FY2019		FY2020		FY2021		전	·감	
구 분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		비중
		, 0		, 0			수	증감률	증감
회계법인 소속	12,242	56.3	13,004	56.9	13,737	57.4	733	5.6	0.5
등록법인(40사)	9,598	(78.4*)	10,335	(79.5*)	10,824	(78.8*)	489	4.7	(△0.7)
4대법인	5,849	(47.8*)	6,135	(47.2*)	6,300	(45.9*)	165	2.7	(△1.3)
총 등록회계사	21,758	100.0	22,861	100.0	23,938	100.0	1,077	4.7	-

- * 전체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중 등록법인 및 4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 4대법인별로는 삼일(+74명, +3.4%), 삼정(+65명, +3.5%)의 증가율이 높은 수준

4대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명, %, %p)

구분	FY2	020	FY2	021	전기대비 증감			
一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	증감률	비중증감	
삼일	2,198	35.8	2,272	36.1	74	3.4	0.3	
삼정	1,845	30.1	1,910	30.3	65	3.5	0.2	
한영	1,100	17.9	1,113	17.7	13	1.2	△0.2	
안진	992	16.2	1,005	16.0	13	1.3	△0.2	
합계	6,135	100.0	6,300	100.0	165	2.6	-	

- □ (경력별 현황)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의 경력은 15년 이상이 4,067명(29.6%)으로 가장 많고 이들 중 등록법인 소속은 2,674명(65.7%), 4대법인 소속은 753명임
 - 4대법인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회계사가 과반수(57.2%)를 차지하는 반면, 4대법인 外 회계법인의 경우 5년 미만 경력 회계사는 10.8%에 불과

경력별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15년	15년이상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수	1,049	1,845	1,516	2,888	2,372	4,067
등록법인 (비중*1)	1,034 (98.6)	1,788 (96.9)	1,374 (90.6)	2,302 (79.7)	1,652 (69.6)	2,674 (65.7)
4대법인 (비중*1)	928 (88.5)	1,650 (89.4)	1,025 (67.6)	1,277 (44.2)	667 (28.1)	753 (18.5)
4대법인 外*2 (비중*1)	121 (11.5)	195 (10.6)	491 (32.4)	1,611 (55.8)	1,705 (71.9)	3,314 (81.5)
경력별 구성비*3	7.6	13.4	11.0	21.0	17.3	29.6
등록법인	9.6	16.5	12.7	21.3	15.3	24.7
4대법인	14.7	26.2	16.3	20.3	10.6	12.0
4대법인 外*2	1.6	2.6	6.6	21.7	22.9	44.6

- *1 회계법인 소속 경력별 등록회계사 중 등록법인, 4대법인 및 그 외 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비중 *2 4대법인 외 등록법인 + 일반법인의 합산
- *3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총원 중 각 경력구간별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
- 한편, 회계법인에 소속된 수습회계사(미등록회계사)는 1,152명이며, 이 중 4대법인 소속은 1,002명(87%)으로 전기(709명, 67%)보다 크게 증가
 -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 등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 후 등록 가능
 - 4대법인을 제외한 법인에서 150명(4대법인 외 등록법인 126명 및 일반법인 24명)이 실무수습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 (인력구성 현황)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회계사 중 이사는 3,535명(비중 25.7%)으로 전기 (3,322명, 25.5%)보다 213명 증가(+0.2%p)
 -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법인의 이사 비율(이사/등록회계사, 15.4%)이 일반법인 (64.2%)보다 현저히 낮음
 - ※ 등록법인의 경우 통합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명의 이사 가 다수의 회계사를 활용하여 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인함
 - 회계법인 소속 총인원*은 29,970명으로, 그 중 공인회계사(수습 포함)가 49.7%이고 공인 회계사 外 인력은 50.3%로 비중이 비슷함

- * 등록, 수습회계사 외 변호사, 세무사, IT 전문가 등 전문가, 그 밖의 일반직원으로 구성
- 특히 4대법인의 공인회계사 비중(59.7%)이 일반법인(30.9%)의 약 2배에 달하는 등 일 반법인은 공인회계사 外 인력비중이 높음

회계법인 인력구성 현황

(단위:명,%)

		등록회:	계사		수습	총회기	계사	기타		
구분	(4)	이사	이사	비율	회계사	(수습포함)	비중	(=)	비중	총원 (F)
	(A)	(B)	(B/A)	전기	(C)	(D=A+C)	(D/F)	(E)	(E/F)	(୮)
등록법인(40사)	10,824	1,664	15.4	15.3	1,128	11,952	58.4	8,518	41.6	20,470
4대법인	6,300	474	7.5	7.3	1,002	7,302	59.7	4,925	40.3	12,227
4대법인외(36사)	4,524	1,190	26.3	27	126	4,650	56.4	3,593	43.6	8,243
일반법인	2,913	1,871	64.2	65	24	2,937	30.9	6,563	69.1	9,500
전체 회계법인	13,737	3,535	25.7	25.5	1,152	14,889	49.7	15,081	50.3	29,970

2. 회계법인 염업현황

- 가. 전체 매출액 : 총 5조 972억원 (+16.8%)
- □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총 5조 972억원으로 전기(4조 3,640억원) 보다 7,332억원 (+16.8%) 증가
 - 업무별로는 경영자문 1조 8,494억원(36.3%), 회계감사 1조 6,575억원(32.5%), 세무 1조 3,936억원(27.3%), 기타 1,967억원(3.9%)임
 - 경영자문부문 매출은 M&A,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新회계기준(K-IFRS17)의 도입 관련 자 문 수요 등의 증가로 전기(1조 4,362억원)보다 4,132억원 증가(+28.8%)
 - 특히, 4대법인을 제외한 등록법인(+36.7%) 및 일반법인(+32.2%)의 매출 증가율이 높 게 나타남
 - 회계감사부문 매출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확대* 등으로 전기(1조 4,838억원)보다 1.737억원(+11.7%) 증가
 - *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2조원 이상 ('19년), 2조원~5천억원('20년), 5천억원~1천억원('22년)]
 - 감사부문 매출은 4대법인(+11.2%) 및 그 외 등록법인(+12.8%) 및 일반법인 (+10.7%)의 증가율이 고르게 나타남
 - 세무부문 매출은 경정 및 불복청구 관련 용역, 세무조정 업무 증가 등으로 전기(1조 2.662억원)보다 1.274억원(+10.1%) 증가

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단위: 억원, %, %p)

		FY2019		FY2020		FY2021		전기	동	
업무별 매출액		금액	비중	금액 (A)	비중 (a)	금액 (B)	비중 (b)	금액 (B-A)	증감률 (B/A-1) ×100	비중 (b-a)
	감 사	12,815	32.7	14,838	34.0	16,575	32.5	1,737	11.7	△1.5
전체	세 무	11,518	29.4	12,662	29.0	13,936	27.3	1,274	10.1	△1.7
회계	경영자문	13,137	33.5	14,362	32.9	18,494	36.3	4,132	28.8	3.4
법인	기 타	1,756	4.5	1,778	4.1	1,967	3.9	189	10.6	△0.2
	합 계	39,226	100.0	43,640	100.0	50,972	100.0	7,332	16.8	-

나. 등록법인 매출액: 3조 8,981억원 (+17.3%)

- □ 등록법인의 매출은 3조 8,981억원으로 전기보다 5,742억원(+17.3%) 증가하였으며,
 - 업무별로는 경영자문(3,586억원, +28.3%)과 회계감사(1,498억원, +11.9%)의 증가율이 높음
- □ 등록법인의 매출 점유율(비중)은 76.5%로 전기(76.2%)보다 0.3%p 증가하였으며, 감사부 문이 비중이 0.1%p 증가한데 기인

등록법인 업무별 매출액

(단위: 억원, %, %p)

		FY20)19	FY20:	20	FY20	21	전기	기대비 변	동
업무별 매출액		금액	비중	금액 (A)	비중 (a)	금액 (B)	비중 (b)	금액 (B-A)	증감률 (B/A-1) ×100	비중 (b-a)
	감 사 (점유율)*	10,530 (82.2)	35.7	12,612 (85.0)	37.9	14,110 (85.1)	36.2	1,498 (0.1)	11.9	△1.7
	세 무 (점유율)*	6,635 (57.6)	22.5	7,268 (57.4)	21.9	7,883 (56.6)	20.2	615 (△0.8)	8.5	△1.6
등 <u>록</u> 법인	경영자문 (점유율)*	11,497 (87.5)	38.9	12,666 (88.2)	38.1	16,252 (87.9)	41.7	3,586 (△0.3)	28.3	3.6
1 .	기 타 (점유율)*	875 (49.8)	3.0	692 (38.9)	2.1	735 (37.4)	1.9	43 (△1.6)	6.2	△0.2
	합 계 (점유율)*	29,537 (75.3)	100.0	33,239 (76.2)	100.0	38,981 (76.5)	100.0	5,742 (0.3)	17.3	-

^{* ()}는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에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다. 4대법인 매출액: 2조 5,337억원 (+17.2%)

□ 4대법인 매출액은 2조 5.337억원으로 전기보다 3.720억원(+17.2%) 증가하였으며, 회계법 인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7%로 전기(49.5%)보다 소폭 증가(+0.2%p)

4대법인(전체) 업무별 매출액

(단위: 억원, %, %p)

		FY2	2019	FY20	020	FY20	021	전	기대비 변동	<u> </u>
업무별 매출액		금액	비중	금액 (A)	비중 (a)	금액 (B)	비중 (b)	금액 (B-A)	증감률 (B/A-1) ×100	비중 (b-a)
	감 사 (점유율)*	6,562 (51.2)	33.1	7,193 (48.5)	33.1	7,999 (48.3)	31.6	806 (△0.2)	11.2	△1.7
4대	세 무 (점유율)*	3,907 (33.9)	19.7	4,383 (34.6)	20.3	4,676 (33.6)	18.5	293 (△1.0)	6.7	△1.8
법인	경영자문 (점유율)*	9,327 (71)	47.1	10,040 (69.9)	46.4	12,662 (68.5)	50.5	2,622 (△1.4)	0.3	3.6
	합 계 (점유율)*	19,796 (50.5)	100.0	21,617 (49.5)	100.0	25,337 (49.7)	100.0	3,720 (0.2)	17.2	-

^{* ()}는 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에서 4대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 □ 4대법인 중 매출액은 삼일(8,886억원)이 가장 크고, 매출증가율은 세무 및 경영자문부문의 매출 증가로 삼정(+22.7%)이 가장 높음
 - o 업무별 매출 증가율은 회계감사부문은 삼일(+14.9%), 세무부문은 삼정(+16.5%), 경영자 문부문은 안진(+36.9%)이 가장 높음

4대법인(개별) 업무별 매출액

(단위: 억원, %)

구분	감 사			세 무			경영자문 및 기타			합 계		
	FY20	FY21	증감률	FY20	FY21	증감률	FY20	FY21	증감률	FY20	FY21	증감률
삼일	2,489	2,861	14.9	2,019	2,169	7.4	3,126	3,856	23.3	7,633	8,886	16.4
삼정	1,947	2,147	10.3	965	1,124	16.5	3,290	4,339	31.9	6,202	7,610	22.7
한영	1,551	1,757	13.3	606	531	△12.4	1,878	2,077	10.6	4,036	4,364	8.1
안진	1,207	1,234	2.2	793	852	7.5	1,746	2,391	36.9	3,746	4,477	19.5
합계	7,193	7,999	11.2	4,383	4,676	6.7	10,040	12,662	26.1	21,617	25,337	17.2

3. 외부감사 수행실적

※ 209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中 외감법에 의한 감사실적(임의감사 등 제외) 보고내용을 분석

가. 외부감사 수행실적 : 총 28.852건 (+7.0%)

- □ 전체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실적은 총 28,852건으로 전기보다 1.883건 증가**(+7.0%)하였고.
 - *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회사가 작성하는 별도재무제표 포함
 - ** '20년 新외부감사법 본격 시행으로 SPC 외감제외 등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1년 자산 및 부채 기준 충족 등으로 외부감사대상 회사수 증가
 - 연결재무제표 감사실적은 총 4,451건으로 전기보다 211건 증가(+5.0%)
- □ 4대법인의 감사실적은 개별재무제표 4,081건, 연결재무제표 1,348건으로 각각 전기보다 174건(+4.5%) 및 92건(+7.3%) 증가
 - 전반적인 외부감사대상 회사수의 증가로 4대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수도 모두 증가*
 - * 삼일 +97사, 안진 +37사, 한영 +36사, 삼정 +4사
- □ 한편, 등록법인의 감사실적은 개별 17,383건, 연결 3,815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2%, 85.7%로 전기(61.3%, 85.8%) 대비 감소

회계법인 외감법상 외부감사 수행실적

(단위: 건, %, %p)

		FY2	019	FY2020		FY2021		전기대비 증감			
=	구 분	전체	상장*	전체	상장*	전체	전체 상장*		체	상	장*
		선세	66	선세	66	선세	00		증감률		증감률
전체	개별	27,942	2,310	26,969	2,398	28,852	2,476	1,883	7.0	78	3.3
선세	연결	4,107	1,754	4,240	1,822	4,451	1,883	211	5.0	61	3.3
	개별	3,990	883	3,907	735	4,081	801	174	4.5	66	9.0
4대	(점유율)	(14.3)	(38.2)	(14.5)	(30.7)	(14.1)	(32.4)	(17.9)	_	(1.7)	-
법인	연결	1,346	747	1,256	634	1,348	674	92	7.3	40	6.3
	(점유율)	(32.8)	(42.6)	(29.6)	(34.8)	(30.3)	(35.8)	(0.7)	-	(1.0)	-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회사

나. 평균감사보수 : 48백만원 (등록법인 69백만원, 4대법인 172백만원)

- □ 외부감사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회사의 평균 감사보수(48백만원)*는 등록법인(69백만원, +5.2%)을 중심으로 증가(+3.1%)
 - * 회계법인의 외감법 법정감사 매출금액 / 외부감사 실적

-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의 도입으로 감사투입시간 증가하였고, 자산규모 가 큰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전기보다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평균 감사보수는 증가 추세**
 - * 감사대상회사 수가 1,883사 증가하였으나, 그 중 자산규모 120억원 미만의 소형회사는 감소(△ 176사, △5.3%)하였으며, 2조원 이상의 대형회사는 크게 증가(+44사, +12.5%)
 - ** 31.4백만원(FY18) → 38.2백만원(FY19) → 46.3백만원(FY20) → 47.7백만원(FY21)

회계법인 외감대상회사 평균감사보수

	구 분	FY19	FY20	FY21	증감률
	외감법감사 배출액(억원)	10,669	12,487	13,770	10.3%
	등록법인	8,901	10,813	11,957	10.6%
	4대법인	5,702	6,326	7,003	10.7%
7	감사실적(건)	27,942	26,969	28,852	7.0%
	등록법인	16,679	16,527	17,383	5.2%
	4대법인	3,990	3,907	4,081	4.5%
щ	경균감사보수 (백만원)	38.2	46.3	47.7	3.1%
	등록법인	53.4	65.4	68.8	5.2%
	4대법인	143	161.9	171.6	6.0%

4. 소송 현황 및 손해배상 준비재원

가.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 □ 최근 3년간 감사업무 부실 등을 사유로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종결된 소송건은 총 54건(해당 회계법인 21개)
 - 이 중 16건의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패소(일부패소 포함)하거나 화해로 종결되어 총 12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 한편, '21사업연도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 진행중인 사건은 총 115건*(대상 회계법인 19개)이며
 - * 대우조선해양(안진) 3,911억원,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한영) 630억원, 파티게임즈(삼정) 207억원, 한국수력원자력(안진) 338억원 등
 - 소송금액은 5,894억원으로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사건 관련 일부 소송종 결 등으로 전기보다 3,698억원 감소

회계법인 소	송현왕
--------	-----

	구 분	FY2019	FY2020	FY2021	3년누계
	민사소송건수(피소종결건)	16	17	21	54
종결	- 패소(일부패소 포함)	3	6	5	14
	- 화해 등	-	1	1	2
	- 승소(기각, 각하 포함)	13	10	15	38
	손해배상금액(억원)	3	5	4	12
	소송건수	124	124	115	
진행	소송금액(억원)	8,872	9,592	5,894	

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현황

- □ '21사업연도말 현재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총 2조 6,668억원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2조 1,913억원(82.2%), 손해배상준비금 3,927억원(14.7%), 손해배상공동기금 829억원(3.1%) 으로 구성
 - ※ 회계법인은 외감법 제32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라 감사업무 등에 따른 고객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내부)을 유보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한국공인회계사회)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전기대비 증가(3,681억원, +16.0%)하였으며,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 * FY2019 22,607억원 → FY2020 22,987억원, → FY2021 26,668억원
 - 이는 4대법인이 달러로 약정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환율상승(1,897억원)* 및 그 외 등록법 인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증가(1,219억원)등에 기인
 - * '21.3월말 1,133.5원/달러 → '22.3월말 1,210.8원/달러 등 평균 11.8% 상승
 - 그 중 4대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1조 9,857억원으로 전체의 74.5%이고, 등록법 인은 2조 5.084억원(94.1%)임
 - 감사보수 총액 대비 손해배상 준비재원 설정비율은 4대법인은 283.6%*로 그 외 등록법인 (105.5%)**과 큰 차이를 보임
 - * (1조 9,857억원/7,003억원) × 100 / ** (5,227억원/4,954억원) × 100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단위: 억원, %)

	7 日	FY2019	FY2020	FY2021	전기대비	증감
	구 분	F12019	F12020	F12UZI		증감률
	손해배상책임보험	18,854	18,792	21,913	3,121	16.6
전	손해배상준비금	3,080	3,437	3,927	490	14.3
체	손해배상 공동 기금	673	758	829	71	9.3
	합 계	22,607	22,987	26,668	3,681	16.0
4	손해배상책임보험(비중)*	17,357(92.1)	16,032(85.3)	17,929(81.8)	1,897	11.8
대	손해배상준비금(비중)*	1,535(49.8)	1,677(48.8)	1,876(47.8)	199	11.9
법	손해배상공동기금(비중)*	52(7.7)	50(6.6)	51(6.2)	1	2.0
인	합 계(비 중)*	18,944(83.8)	17,758(77.3)	19,857(74.5)	2,099	11.8

^{* ()}는 전체 회계법인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중 4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5. 기타 정보

※ 감사품질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등을 위하여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2019사업연도로부터 이 사보수,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 신규 공시사항 확대

가. 이사 보수 : 5억원 이상 총 171명, 평균 8.6억원

- □ 2021사업연도 중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이사는 26개 회계법인 소속 총 171명으로, 이 중 4대법인이 128명(74.9%)
 - 전체 회계법인의 5억원 이상 이사보수 평균은 약 8.6억원이며, 삼일이 57명으로 최다 인 원을 공시

회계법인 이사보수 공시 현황

(단위: 명, 억원)

			등록	회계법인			a 11		
구분			4대법인		4대법인외(3	일반 법인	합계		
	삼일	삼정	한영	안진	소계	6사)	답인		
인원	57	51	11	19	128	35(15)	8(7)	171	
총액	517.7	389.1	110.2	84.3	1,101.4	251.0	115.2	1,467.6	
평균	9.1	7.6	10.0	9.4	8.6	7.2	14.4	8.6	

^{* ()}는 법인수

나. 품질관리 예산 비중(평균) : 전체 예산의 3.3% (4대법인 3.7%)

- □ 등록법인이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3.3%*이며, 이 중 4대법인은 평균 3.7%로 전기(3.6%)와 비슷한 수준
 - * 총 인건비 대비 품질관리실 인건비
 - 전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예산은 회계법인별 품질관리 담당직원의 경력 및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1~3% 수준

Ⅱ. 시사점

- [] 감사인 등록제 시행 등으로 회계법인의 대형화 추세가 지속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 등으로 회계법인간 합병분할, 인력 증원으로 회계법인의 규모 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 * 등록회계사 100명 이상 회계법인: 17개(FY19) → 19개(FY20) → 20개(FY21)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의 도입으로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등록회계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 * 등록회계사 수 : 21,758명(FY19) → 22,861명(FY20) → 23,938명(FY21)
 - **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비중 : 56.3%(FY19) → 56.9%(FY20) → 57.4%(FY21)
 - 소속 회계사에 대한 교육 강화, 감사업무 배정시 인적자원의 적격성 심사 등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 ② 외부감사대상 회사수 증가에 따른 감사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新외감법 도입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증가*하였으나, 등록법인의 감사실적 비중**은 전기보다 감소
 - * 전체 외부감사 실적 : 27,942(FY19) → 26,969(FY20) → 28,852(FY21)
 - ** 등록법인 외부감사 비중 : 59.7%(FY19) → 61.3%(FY20) → 60.2%(FY21)
 - 등록법인뿐만 아니라 일반법인(감사비중 39.8%)도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 사품질관리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부실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③ 경영자문 등 비감사 업무에 대한 독립성 강화 필요
 -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당기 경영자문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회계감사 매출비중을 상회**
 - * 경영자문 매출액 : 1조 3,137억원(FY19) → 1조 4,362억원(FY20) → 1조 8,494억원(FY21)
 - ** 전체회계법인 경영자문 매출비중 : 36.3%. 회계갑사 매출비중 : 32.5%
 - ㅇ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 수임시 위험평가 및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수

행하여 독립성 훼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④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 필요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기초자료 및 피투자기업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품질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됨
 - 따라서 사업보고서의 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를 보다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 공시할 필요
 - ※ 회계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허위기재, 기재사항 누락 또는 부실기재시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조치



보기에 당시율 괴표획 장 및 회계반당시 외회 외상매출금 당기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4일(화)	10월 5일(수)	10월 6일(목)	10월 7일(금)
0	달		러	(USD)	1432.10	1431.20	1419.10	1404.20
위	안		화	(CNH)	201.26	201.79	201.52	199.40
일	본		엔	(JPY)	991.38	993.58	982.08	968.58
유	로		화	(EUR)	1408.18	1429.05	1403.77	1374.71
영	국 파	운	드	(GBP)	1622.71	1640.37	1608.12	1566.39
캐	나 다	달	러	(CAD)	1050.81	1059.44	1042.61	1021.65
홍	콩	달	러	(HKD)	182.43	182.33	180.79	178.88

틍	호	ŀ	명	10월 11일(화)	10월 12일(수)	10월 13일(목)	10월 14일(금)	10월 17일(월)
0	달	러	(USD)	1410.30	1433.50	1430.40	1427.00	1428.90
위	안	호	(CNH)	198.64	199.66	199.23	198.74	198.79
일	본	엔	(JPY)	968.31	982.96	974.88	968.87	961.67
유	로	호	(EUR)	1369.26	1392.29	1388.13	1395.04	1391.03
영 국	파 운	- 드	(GBP)	1560.85	1574.34	1586.96	1616.22	1604.37
캐 나	다 딜	남	(CAD)	1023.96	1039.52	1034.91	1037.97	1030.58
홍콩	를 달	러	(HKD)	179.66	182.61	182.22	181.79	182.03

	통	화		명	10월 18일(화)	10월 19일(수)	10월 20일(목)	10월 21일(금)	10월 24일(월)
0	달		러	(USD)	1436.60	1425.60	1420.60	1431.70	1436.60
위	안		화	(CNH)	199.25	198.12	196.21	197.35	197.77
일	본		엔	(JPY)	964.10	955.82	948.11	953.42	962.03
유	로		화	(EUR)	1413.83	1406.78	1387.07	1400.20	1414.05
영	국 파	운	드	(GBP)	1631.12	1617.77	1591.78	1607.23	1625.73
캐	나 다	달	러	(CAD)	1047.58	1038.46	1031.48	1039.20	1052.22
홍	콩	달	러	(HKD)	183.02	181.61	180.98	182.41	183.02

	통	화		명	10월 25일(화)	10월 26일(수)	10월 27일(목)	10월 28일(금)	10월 31일(월)
0		ŀ	러	(USD)	1436.60	1436.50	1428.20	1418.10	1419.30
위	5	ŀ	화	(CNH)	197.86	195.58	195.17	196.77	195.94
일	둗	<u>-</u>	엔	(JPY)	965.39	969.92	975.58	969.91	961.19
유	토	2	화	(EUR)	1420.08	1430.90	1440.20	1413.92	1413.34
영	국 교	ŀ 운	드	(GBP)	1624.79	1645.51	1659.71	1640.81	1645.96
캐	나디	 달	러	(CAD)	1049.11	1054.08	1053.09	1045.87	1042.91
홍	짱	달	러	(HKD)	183.01	183.00	181.95	180.66	180.83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 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